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1 보고서

세션명	디지털 경제의 역차별 이슈: 구글세 이후의 세상			
일시	2017.9.15.(금) 10:45~12:15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소회의실 1	
참석자	사회	강하연(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제	하윤금(한국콘텐츠진흥원)
	패널	최성진(인터넷기업협회)		김종영(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최진웅(국회입법조사처)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플로어	안창남(강남대학교)			
플로어	약 30명 참여			

워크숍 취지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인터넷 기반 디지털경제의 특성(고정사업장 불필요, 국경간 자유로운 거래, 데이터 이동 등)을 이용 조세회피를 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본사 소재 사업장이 소득발생의 주요 원천이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가 소득의 원천이 되나, 물리적 실체를 기반으로 한 현행 과세 기준하에서 실제 소득의 원천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됨.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OECD BEPS 수립이나, 몇몇 유럽 국가에서의 세금 징수, 올 6월의 EU의 과징금 부과등이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국도 국회,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조세회피, 공정경쟁역차별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 상황분석 및 규제추진 검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다중 이해자의 토론을 추진하고자 함.
	동 워크숍에서는 조세, 공정경쟁뿐 아니라, 경제적 과급효과, 역차별 이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

1. 구글세란?

- 유럽에서 구글의 데이터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

(1) 개요

- 개념: 유럽 각국에서 2000년대 초부터 구글로 대표되는 인터넷 기업, IT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저작권 침해 소송, 조세 회피 등에 대해 벌금/체납세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구글세로 통칭

(2) 종류

- 소송: 반-독점 소송에서 불공정 거래 판결에 따른 벌금으로의 구글세
- 불공정 사용: 콘텐츠 사용료/저작권료에 대해 세금형태 징수 목적 구글세
- 조세회피에 따른 구글세: 주로 법인세 관점에서의 구글세와 부가세 관점에서의 구글세

(3) 쟁점

- Data storage: Data governance 이슈
- Privacy laws: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보호 등

- National Security : 중국, 러시아 등

2. 구글세 논의 배경

(1) 독과점 문제 - 인터넷 환경 문제

- 유럽각국에서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독과점 문제제기
- 구글 검색서비스 우선, 검색순위 조작 등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행위
- 온라인검색 장악력이 높은 구글이 자사의 검색 서비스에 포함된 제품 정보 우선 표시
- EU는 2010년 7월부터 불공정 행위 조사,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내림
- 구글은 개선안 제시하여 합의 종결(2013.4.), 그러나 유럽 반발

(2) 독과점 문제 - 모바일 환경

- 안드로이드 자체가 불공정 행위를 강요
- 구글 자사 앱 의무적 선택재 문제
- EC는 2013년부터 구글의 모바일 관련 독점금지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 포르투갈 앱마켓 사업자 앱토이드가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EU제소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OS, 광고 서비스 AdSense에 대해서도 반독점 행위 조사 진행 중

(3) 저작권 문제

- 2000년대 중후반 유럽 신문사 중심으로 구글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에 저작권 소송
- (프랑스) 언론이 침해 소송 제기, 콘텐츠 이용료와 사이트 접속 지원금 제공, 저작권료나 조세형태는 막으려 하는 제스처
- (벨기에) 벨기에언론협회의 제소, 구글 패소, 이후 구글이 화해하고 종이매체의 디지털 진화 지원 약속
- (독일) 저작권법 개정 법안 발의, 검색엔진이나 포털사업자가 발체를 노출할 경우 로열티 제공하는 보조 저작권 개념 도입, 그러나 기준 불명확과 유/무료 저작권료 기준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졌고 신문기사의 구글 등록을 자발적 선택으로 바꾼 결과 모두 다시 등록
- (스페인) 스페인 신문협회 AEDE가 구글의 보상 없는 뉴스 사용에 대해 불만 제기, 독일의 경험을 거울삼아 새로운 지적재산권법 개정안 통과, 이후 발체하거나 링크를 거는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료 지불 의무화

(4) 조세회피 문제

-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세수 증대를 위해 인터넷, 디지털 기업의 법인세 탈루 문제화
- 법인세율이 적은 나라로 세원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조세회피 대책 마련
- 대안
 - (가) 직접세(법인세)
 - (나) 간접세(부가세)
- 프랑스 : 온라인 광고세로 광고비요의 1%를 조세로 부과, 그러나 다국적 광고회사의 경우 조세회피 가능, 실제 부담은 자국 중소형 광고회사로 이전됨.
- 호주 : 구글을 통해 광고하는 호주 기업의 광고는 Google Australia와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호주 세법에 따른 세금 부과, 약 10배 가량 법인세가 증가했으나, 검색서비스 매출은 싱가포르로 이전
- 일본 : 소비세 부과 방침을 밝혔음. 과세기준을 서비스 제공기업 소재지에서 서비스 이용 소비처로 변경되며 해외 세무당국과 공조 예정

(5) 진척

- 반독점 소송 : 3가지 쟁점으로, 검색 서비스 문제(인터넷), 안드로이드 문제(모바일), 광고 서비스 문제, 아직 벌금을 물리기에는 이르고, 부족한 면이 존재
- 저작권 문제 : 정보세, 스페인 저작권법에 도입된 세금제도 기반으로 진행 중
- 조세회피 문제 : 각 국가별 대처 방안 마련, 국제적 공조 체제로 조금씩 진척 중

3. 국내 구글세 논의

(1) 불공정 경쟁 - 역차별

- 국내 기업은 개인정보 이용이나 콘텐츠 활용규제의 제약이 많음
-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규제
-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

(2) 저작권 관점 구글세

- 국내에서는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논의 없음

(3) 조세회피 문제

- 국내에서 광고 매출 관련 세금 납부하고 있고 탈세는 없다는 입장, 외부감사와 공시의무 없음
- 법인세법 개정안 논의, 고정 사업장 문제 존재
- 부가세 문제는 이미 논의 완료

4. 패널 토론 및 결론

(1) 기타 쟁점

- Data storage and privacy laws :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 정보가 자원이 되는 시대에 자원 보호를 위해 해야 함.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로, EU와 US는 privacyshield 채택, 우리의 데이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함
- National security : 자국 플랫폼을 지키기 위한 수단, 문화 제국주의 문제

패널별 의견

(최성진 패널 - 산업계)

- 역차별 문제를 잘 바라봐야 함. 구글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옹호하거나 키우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 아닌, 각 사회의 맥락을 이해해야 함
- 유럽은 자국 플랫폼 초토화 상황에서, 이용자와 플랫폼 보호를 위해 적용됨
- 중국의 경우 차별을 둠: 외국기업 배척
- 우리나라는 두 방법과 다르게, 국내 인터넷 산업이 튼튼하고, 역차별 환경 때문에 힘겹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려다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게 됨
- 국내 규제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글로벌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진행해야 함
- 그렇지만 기업에게 꼭 필요한 규제는 정부가 집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함.

(김보라미 패널 - 시민사회)

- 데이터 저장 문제에 있어서 국내법에서는 강력한 동의를 받아야 함
- NGO 측에서 구글을 소송 결과, 미국 본사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따르고, 구글 코리아는 본사와 관련 없음을 밝힘

- 여러 가지 공정거래위원회 ISSUE가 있음
- NGO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함

(김현경 패널 - 학계)

- 아프리카에서 유튜브로 옮겨가는 이유 : 국내 유튜브 동영상 광고비가 네이버의 2.5배, 방송3사 총합의 5배로, 이 이면에는 잘못된 거래 규제가 있음
- 한국에서 구글은 망 사용료 지불 안 함
- 국내포털은 수익구조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부당 차별적 취급을 받음
- 내국사업자에게 불리한 규제를 국가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 필요

(안창남 패널 - 학계)

- 앞으로 사회는 구글 대 나머지 기업 체제가 될 것
- 조세 규정을 보면, 고정 사업장에 대한 회피 방법이 충분히 존재
- 부가세는 현재 입법 조치 완료, 소득세가 문제가 됨
- 전 세계적으로 범용화될 수 있는 TOOL 필요

(최진웅 패널 - 공공계)

- 글로벌 스탠드에 적절하게 가고, 불공정 경쟁에 대해서는 상호적 규제 필요
- 법인세의 경우 개정안이 없음, 이유는 원천소득 과세를 위해 고정 사업장이 필요 하나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해외까지 함께 변화해야 하기 때문
- 반독점 규제 문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문제로, 과거에는 망 사업자였으나 이제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커져서 남용 행위를 차단하는 식으로 평가해야 함. 포털의 영향력이 세지더라도 포털을 겨냥한 규제 제정보다는 현재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정기적 규제를 진행하는 것이 나아 보임
- 저작권 문제는 국내 구글세가 진행되면, 누구에게 이득일지에 대한 의문. 현재 저작권 문제없이 해도 이익이 생기는 상황에서, 규제를 해야 하는지 의문
- 국내 사업자들의 경우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콘텐츠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사업자에게 해외로 나갈 발판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

(김종영 패널 - 공공계)

-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여러 부분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집행력이 확대되어야 함
-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보완으로 국내든 외국이든 적용되도록 보완 된 상황

(하윤금 발제자)

- 법인세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 대해 연말에 김해영 의원이 발의 예정.
- 현재 OECD 법인세 가이드라인 존재
- 지속적인 정보 사회에서는 앞선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여론화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2 보고서

세션명	오픈데이터와 정보공개, 정부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일시	2017.9.15.(금) 10:45~12:15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태관 소회의실 2
참석자	사회	윤중수(법무법인 광장)	
	발제	오원석(사단법인 코드)	패널
		정진임(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박지환(오픈넷)	김경민(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형욱(라이프스퀘어/퓨처디자이너스)
플로어	약 20명 참여		

워크숍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를 통한 투명성과 혁신, 그리고 오픈 데이터의 역할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포함하는 오픈데이터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플랫폼으로써 인터넷의 역할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정보공개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거버넌스 방안에 대하여 열린 대화 진행 - 열린정부를 위한 OGP(Open Government Project) 현황과 의미 -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실현과 공공,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사회 혁신
-----------	--

1. 데이터를 통한 투명성과 혁신, 그리고 오픈데이터의 역할 (오원석 발제자)

- 오픈 데이터와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 와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 열린 정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공공에서 만든 데이터를 재활용해서 어떤 의미를 데이터로써 보여주는 것
- 디지털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데이터는 자원이고 재료. 즉, 재료와 자원을 가지고 통찰력이나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 그러나 데이터를 가공해서 주는 노력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가 개방하는 것이 중요
- 데이터의 중요성: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많은 곳에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함. 그러나 국내에서 적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때 공공데이터 포털보다는 위키피디아나 디비피디아 등 또 다른 오픈데이터 영역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사람이 더 많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함.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막상 찾아보면 쓸 만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
- 데이터 개방: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안 찾아지고 없는 것이 문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찾다 좌절하는 경우가 발생
- 이로 인해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짐. 반면 데이터가 있지만 별로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제를 해서 사용할 수 있음. 이는 데이터를 개선해나가면 될 것. 일단은 데이터 개방이 우선시되어야 함

- 데이터가 잘 활용되려면?

1. 활용 가능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알아야 함
2.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함
3. 그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야 함
4. 그 데이터가 기계적 활용이 유용해야 함
5. 연결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함

-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기관은 어떤 데이터가, 어느 서버에, 누구의 관리 하에, 어떤 형태로, 어떤 정책 하에 존재하고 있는 지에 대해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2) 민간영역에서 공공데이터 공개를 위한 노력

- 데이터 목록의 필요성 : 어떤 기관에서 어떤 도메인의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 또한 데이터가 있어도 개방이 불가하다면 보안, 개인정보, 데이터의 저작권 때문인지?
- 시민들에게 정보 수정 및 히스토리 공개해야 함
- 민간에서 시민들이 어떤 데이터를 더 잘 쓸지 추측과 가정을 함. 그러나 누가 어떻게 사용할 지는 시민이 판단해 함
-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 고민, 애정, 노력이 필요함
- 공공데이터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참다운 데이터의 재활용이 될 것

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정진임 발제자)

- 정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이며, 이는 인권으로 보장 받아야 할 중요 가치이다

(1) 정보공개제 제도의 변화

-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안에서 알권리가 포함됨.
- 알권리 : 공공기관, 국가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보를 접근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하는 권리
-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이 국가권력에 방해를 받지 않고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 이에 따라 제도가 생겼으나 우리는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가?
- 1991년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이후 시에서 재판, 헌법재판소 판결
-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후, 1998년 시행
- 2006년 인터넷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이트 개설 "열린 정부"
- 2008년 정보공개 정책, 알권리, 투명성 모두 후퇴
- ex) 열린 정부 사이트를 정보공개시스템으로 개편. 정부의 정체성이 드러남
- 2013년 정부 3.0의 국정과제, 정보공개시스템의 개편
- 2017년 문재인 정부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의 전면 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
- 정보공개제 제도의 변화로 인해 늘어난 정보공개 청구 : 인터넷 사이트 개설 이후 정보공개 청구의 증가

(2) 정보공개 잘 하고 있나?

- 정보공개청구에 맞게 정보공개가 되고 있는가? 아니다
- 1. 정보가 시민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
- 2. 시민들이 정보를 알면 사회적 혼란이 온다는 신념 탓에 과정 사이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 최근 행정정보 뿐 아니라 삶과 관련된 정보까지 알려주지 않음

- 하지만 국가는 일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13번째 제정, OECD 데이터 개방 지수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위
- 서울시 누드 프로젝트 : 원문정보, 회의정보 공개,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정보공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 전문 인력 배치, 자치구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업무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 알권리 관련 조례 재개정 추진
- 정부3.0 :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와, 서비스 정부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투명한 정부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음. 데이터 파일형식 문제, 공개율이 증가한 것도 아니었음
- 정보 원문 공개 : 원문 3억 건 공개공약으로 인해 불필요한 정보의 양의 증가(토너구입 증명서 등)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 문제인 정부의 정보공개, 공공정보 영역 주요 실천 과제.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 보아야 할 듯

(3)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는?

- 공개하는 정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정부와 시민간의 신뢰감이 구축되어 있는지?
- 1. 제도개선(알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 정보공개법의 개선(정보공개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전문가들이 공개정보의 질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함. 공개정보의 원칙을 정해서 일정수준의 합의와 관리 필요)
- 2. 정보공개 영역의 확대 : 공공정부의 생명, 안전, 건강, 교육, 복지 등 5대 국민 관심분야의 정보 공개 확대 및 강화, 정책 제안, 결정, 평가, 과정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 참여 확대(주요 회의 공개 제도 도입, 회의의 기록관리 강화(원전 관련 회의) 등)
- 3.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혁신 : 국민의 편이에 맞춘 공공정보 접근성 개선, 오픈 포맷 기반의 행정정보 생산, 유통, 활용 체계 구축

3. OGP 소개 및 참여형 거버넌스 제언 (박지환 발제자)

-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정부에 어떻게 제안하고 참여형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지에 대해 회의

(1)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 정부 간 협의체,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각국이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시작됨. 이후 각국에서 열린 정부 선언
- 시민사회와 같이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 후 2년마다 공약을 발표하고 실행, IRM이라는 별도의 리서처를 통해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참여했는지 평가
- 2010년 초반부터 참여, 올해 행안부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OGP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운영위원으로 지원해서 선발되었음
- 최근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같이 연관되었고 SDG 16 의제에 오픈 거버넌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OGP는 SDG와 함께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OGP가 참여형 거버넌스의 마중물이 됐으면 함.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참가하는 포럼에서 열린 정부의 정책을 같이 만들어나가고 집행하는 것이 목표
- OGP의 추구 : 책임성, 참여성, 투명성 : 다수의 참가자가 하나의 포럼을 통해서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통해서 실현이 가능
- IRM 리서처 : OGP에서의 독립적인 평가 기관, 2년마다 공약 실행 여부 평가 -> 시민사회의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에 평가가 좋지 않았음
- 그 후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음, 서울시도 지방 자치정부로 참여(Wego-전자정부협의체) 해서 OGP 협력

(2) OGP를 통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제언

- 공공정부의 적극적 공개, 공공데이터의 개방 등의 세부적인 목표를 OGP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공약
- OGP 운영위원국으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예산을 참여형 거버넌스 이행의 동력으로 활용 가능
-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정보공개 강화 및 공공데이터 질적 향상을 통한 투명한 정부 구축
-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공무원들이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함
- 자주 얼굴을 맞대고 말을 주고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4. 패널 토론

- 정부의 혁신, 투명한 정부, 신뢰성 있는 정부 -> 이것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정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전지은 패널)

- 국제회의에 가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어드밴스 되어 보임
-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인터넷이나 프로그램 등의 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사용률에 비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
- ex) 필리핀, 아프리카의 경우 다수가 이메일과 엑셀을 사용하는 법을 모름
- 외교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는데 왜 궁금해 하는지 물어보는 편. 수상하게 여김
- 이것이 당연한 시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이에 만연한 생각임.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이끌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다양한 나라들이 최근 극비 문서 같은 경우에도 더 공개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국제적으로 원조 정보를 공개하려는 OGP같은 파트너십, 국제 규범에 따라 한국도 공개하고 있음
- 그런 규범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이것이 정부를 게으르게 만드는 경향이 존재. 그러한 규범에 맞게만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
- 이러한 자기 합리화가 정부 투명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기준이 아닌가? 그렇다면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으로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 시민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갖고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을까? 다양한 참여 독려 예시가 존재
- ex) 마인크래프트 : 마을을 만드는 게임. 아프리카의 도시, 마을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마을을 꾸미는 프로젝트. 거버넌스에서 사각지대인 10대를 위해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
- ex) 스쿨 프로그램 : 공립 학교에 등록하려는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가 더 좋은 학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ex) 푸드 포 아메리카 : 학부모가 나에게 필요한 정보라는 것을 인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시민의 입장에서 거버넌스에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학교에서 장려해야 함

(2) 기술을 통한 시민의 사회참여 (최형욱 패널)

- 기술을 통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까?
- 세월호 참사 : 당시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음
-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을까? 수많은 하인리히 법칙의 전조가 보였으나 아무도 공유할 수 없었음
- 노티 : 우리 주변의 위험한 요소들을 직접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공유 가능. 그게 어떻게 조치가 되고 해결됐는지? 그 과정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
- 하지만 서비스를 진행한 지 1년이 지나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음. 서비스도 물론 부족했지만 시민들이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 참여를 많이 하지 않음

- 경주 지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판에 원전이 건설된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밖에 없음
- 만약 원전이 금이 가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우리가 과연 막을 수 있을까?
- 세이프 케스트: 일본은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수치를 일반 시민에게 전혀 공개를 하지 않음. 시민단체에서 아두이노 이용해서 직접 방사능 수치를 웹사이트에 공개함.
- 세이프 케스트를 한국에 초대해서 경주, 포항에서 시험 운영할 경우,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에서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정부가 공개할 것인가?
- 거버넌스에서 정보공개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 따라서 시민들의 노력과 연대가 중요. 앞으로 수많은 디바이스가 개발됐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측정해서 어떻게 공개를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3)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 (김경민 패널)

- 오픈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온다면 새로운 산업의 탄생이 가능
- 하지만 국토부, 행자부가 공개된 데이터를 이어주는 커먼 변수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하여, 연구자가 직접 다 정제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고려해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
- 서울시 범죄지표: 오픈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공개를 하지 않음. 모든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데이터를 겨우 얻었음.
- 하지만 경찰서에서 저널의 분석결과 심사를 거부함. 어떤 특정지역에서 낙인효과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 때문
-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범죄율이 높은 곳의 노력으로 오히려 범죄율이 낮아짐. 오픈데이터로 인한 부정적인 가능성도 있지만, 사회를 바꾸는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함. 따라서 오픈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분석결과와 공개도 중요.
- 사상의 자유: 오픈데이터 뿐 아니라 분석결과가 오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중요
- ex) 1990~2009년 모든 학생들의 수능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결과, 교육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명확하게 나타났음.
- 금천구와 강남구에서 영어 같은 경우, 격차가 굉장히 확대되어 드러남. 교육부 역시 사교육 시장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음
- 이처럼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고 자본을 갖춘 시장에서만 공유하고 있는 은밀한 데이터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수준과 원칙을 세우고 굉장히 컨피덴셜한 부분의 경우 특정 그룹만이라도 공개가 되어야 함

(4) 마무리 (윤종수 사회자)

- 지금의 현황, 정부에서 정보공개가 왜 안 되는지, 글로벌 차원에서 정부는 투명한 사회를 위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음
- 아직까지는 정부의 노력 부족으로 오히려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함
- 현재까지 데이터의 공개, 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두려움, 또한 시민들의 두려움, 무관심이 있으며,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편. 이러한 허들이 낮아지지 않으면 수많은 혁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애가 있을 것
- 앞으로 두려움을 갖는 쪽에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정부쪽에서도 어떠한 명분을 주는 것이 필요
- 거버넌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 즉 혁신을 위해 정부 및 시민사회 모두 플러스가 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 다만 지금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음

질의

(플로어)

- 강력범죄 통계 사례를 듣고 얼마 전, 서울의 가임기 여성 지도가 떠올랐다. 당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런 것 같은 경우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아닌가? 정보공개는 꼭 긍정적인 면만 있을까?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 또 다른 예로, 사업을 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열람 할 때, 정보의 질이 너무 낮았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보를 얻는데 막막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무작정 요구하기에는 고충이 있다.

(박지환)

- 거버넌스를 어떻게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력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오픈 거버넌스, 협치 등의 많은 사업들을 통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너무 서울에서만 이러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국적인 논의가 되기 위한 방안을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진임)

- 어떤 정보가 제일 먼저 공개되어야 할까? 데이터는 당장 공개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메타데이터는 먼저 공개되어야 한다. 메타데이터를 통해 어떤 정보가 분석되었는지 그 목록만 공개가 된다면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급되고 있는 정보의 공개만 있어도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보를 못 찾을 경우의 허탈감과 좌절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오원석)

-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데이터는 공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공개가 되지 않는지 알려줘야 한다. 또한 시민의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한다. 같이 협치가 되면 좋겠지만,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의 수가 적다.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적다.

(윤종수)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분산되어 있는 움직임이 합쳐지면 좋겠다.
 2. 메타데이터의 공개, 목록의 공개부터 시작해야 한다.
 3. 시민들의 속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논의의 3가지 과제의 지속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구성과 참여가 필요하다.
 - ODF : 한 곳에 모여 멀티 스테이크 홀더의 참여, 정부쪽의 정보공개 정책에 관여하기 위해 만들어짐, 포럼의 구성원들과 적극적인 분들을 모집 중이다. 시민들의 참여부터 시작해야 한다.
 - OGP : 시민단체끼리의 참여로 인해 같은 방향으로 서로간의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다. 올해 OGP 이사회국으로 선정되었으며 그곳에 모인 각각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힘을 모여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공공데이터 전략 위원회 법적위원회 새로운 기수 3기 출범으로 이전과 다른 활동으로서 데이터 목록공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다.
- 각각 단체에서 하는 활동 모두 시민의 역량강화가 목적. 하나하나의 활동이 반복됨으로써 시민의 역량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3 보고서

세션명	멀티스тей크홀더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주소자원법 개정 방향			
일시	2017.9.15.(금) 10:45~12:15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소회의실 5	
참석자	사회	이동만(KAIST)	발제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
	패널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김기중(법무법인 동서양재)
		전길남(KAIST)		
플로어	약 15명 참여			

워크숍 취지	<p>인터넷 주소자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라는 민간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기업·기술계·학계·이용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p> <p>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분과에서는 2016년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향후 방향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작업으로 KIGA 주소분과에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p> <p>국내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국내 주소자원 거버넌스를 보다 민주적이고 다자간 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로 개선하기 위해, 주소자원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p>
---------------	--

1. 바람직한 인터넷거버넌스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방향

- 열린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할 예정

- 왜, 지금, 법률개정인가?

거버넌스는 협치의 과정이며, 법으로 제도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제도화를 논의할 필요성이 농후해졌다. 법률안을 제안하고 논의해보자.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의 시작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1) 한국 인터넷거버넌스 역사

- 인터넷주소위원회 ->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인터넷발전협의회->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 협의회: 2015년 KrIGF 시작 (다자간 인터넷거버넌스 활성화방안) -> 2016(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 KIGA 주소분과 워킹그룹- 한국주소자원 거버넌스 현황과 향후 방향 보고서 기반) -> 2017(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방향)

(2) 무엇이 문제인가? 그 해결책은?

- 이해당사자의 참여부족 : 정부의 참여 부족(인터넷주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심이 없음. 혹은 거버넌스 외의 다른 방식을 생각하거나) + 기업 및 이용자의 참여부족

- 거버넌스 기구의 지속성 및 안정성 부족 - 조직적, 재정적 취약성

-> 작년 제시된 해결방안 = 정부의 참여 의지와 투자, 인터넷주소자원 거버넌스 기구 제도화,
이해당사자의 참여활성화 등

-> 2017년 현재 과제 = 제도화와 참여활성화의 상호모순관계 해결에 있어서 법률안 개정이 필요

(3) 인터넷 주소자원법 개정 취지

- 정부주도의 하향식 주소자원 관리체제로부터 변화해야 할 필요성 증가

- 민간 각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한 상향식 주소정책 논의기구 구성의 필요성

- 국제적 기구인 ICANN, OECD 등에선 이러한 상향식 멀티스тей크홀더의 의사결정구조가 여러 국가들에 의해 채택

(4) 인터넷 주소자원법 개정안 (1안)

- 인터넷주소에 관한 정부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

- 민관정책기구로서 멀티스тей크홀더 구조에 의한 상향식, 민주적 선출에 의한 인터넷주소위원회 신설

- 정부의 최종적 감독권한은 유지

-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KISA 소속 '인터넷정보센터'의 재단법인화 고려

(5) 인터넷 주소자원법 개정안 (2안)

- 현실적으로 1안 추진이 어려울 경우 선택하면 되는 수정대안으로서의 존재

- 현재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선출절차를 변경하여 상향식에 가깝도록 개정

-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참여를 위하여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멀티스тей크홀더 방식으로 운영(2005-2006 실무위원회모델의 단점 보완)

(6) 개정안 평가

- 1안은 법률 전면개정이 필요하며 상당한 논의 및 협의가 전제

- 2안은 부분적 변화이며 상대적으로 도입하기 수월할 것으로 예상

- 여건에 맞게 논의하되, 법개정의 진정한 취지는 민간 참여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 법 개정안 현실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의원이법 가능성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부 의견수렴, 각 이해당사자의 공개적 의견 수렴.

- 설득 논거로서 국제적인 사례 수집(OECD국가 내 선진국 주소거버넌스 사례 연구), 국내 다른 분야에서의 유사사례 수집(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례 연구)

- (OECD자료) 정부가 인터넷주소를 관리하는 국가는 핀란드,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중국 등 몇개 국 안됨.

- 일본 역시 민간법인이 관리하는 방식(JPRS), 정부는 필요시 상의 및 자문위원회에서 관리감독 역할에 한정.

<패널 토론>

(전길남 명예교수)

- 멀티스тей크홀더 작업을 하기 전에, 그 맥락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주소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멀티스тей크홀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개념 정리를 해야 한다.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내에서의 명확한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재정 지원이 가장 큰 문제이다. .kr로 벌어들인 수익 등이 인터넷 발전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주소 등록비를 세금의 특별한 형태로 생각하는 것 같다.

-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가리키는 '주소'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메인 네임이나 IP 주소만 의미하는 것인가, 카카오톡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포함하는 것인가.
- 구 소련에서 현재 러시아로 국가도메인네임의 전환을 이룬 유일한 사례인 러시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경우 원래 .ru 는 없고 .su(소련)만 있었다. 우리나라도 통일을 대비하여 이와 같은 준비를 고려해야 한다. 15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변화가 없다.
-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민주적으로 거버넌스를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모델도 좋은 것 같다.

(김기중 변호사)

- 10여년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것의 핵심은 주소자원관리의 국제적 구조가 bottom-up과 multistake-holder 라는 점이다. 국회를 통해 법률안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개정법 1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2안이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2안의 난점은 기존에 있다가 사라진 실무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일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실무위원회가 대체하는 것인데, 실무위원회의 필요성과 심의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 1안의 경우 주소위원회 신설시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조직의 형태는 재단법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법인이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심우민 교수)

- 입법전략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겠다. 현실적으로는 2안이 통과되기 쉽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 안을 의원발의로 모두 올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 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주소자원법이 총 9회 개정되었는데 내용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최초의 입법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에 민간 의견 반영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고민했던 것이 보인다. 그러나 법이 한번 개입되기 시작하면 법 체계 안에 간혀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 현행 입법 역시 넓은 정의를 택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국가의 관여도가 크다. 따라서 법안 제정은 기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고, 문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윤복남 변호사)

- 법개정 및 제도의 기반으로 멀티스테이크홀더를 단순 민관협의체로 볼 수는 없다. 법 개정 이상의 문화적인 차원,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 심우민교수가 제시한 2개안 동시추진에 동의한다.
-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미국 상하원의 개념에서 착안하였다. 심의위원회 - 상원의 역할 / 실무위원회 - 하원의 역할. 책임 부담이 적은 경우 발언 및 참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전길남 명예교수)

-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은 사실 기업 중심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시민사회의 참여 및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멀티스테이크홀더 개념은 오래된 개념이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이동만 교수)

-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면 크게 3가지이다.

(1) 변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주소자원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2) 멀티스테이크홀더라는 것이 무엇인가? - 자연스러운 참여와 개방적 논의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3)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법제도 정착의 목적은 안정적 재정확보에도 있다.

(심우민 교수)

- 우리나라에서 멀티스테이크홀더 개념이 법으로 제대로 반영된 사례가 없다.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해왔다. 주소자원개정법이 멀티스테이크홀더라는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로어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주소자원과 관련된 논의가 점차 그 중요성이 희미해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이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를 구현할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플로어 : (안정배, APSIG)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보통 중재의 역할이나 감독 역할을 하는데, 만약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입장으로 참여한다면 그 폐해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4 보고서

세션명	제로레이팅, 과연 통신비 인하의 정답인가? - 시장경쟁 질서 측면에서 살펴본 제로레이팅			
일시	2017.9.15.(금) 13:30~15:00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소회의실 1	
참석자	사회	박지환(오픈넷)	발제	박지환(오픈넷)
	패널	류민호(호서대학교)		이금노(한국소비자원)
		이상협(네이버)		
플로어	약 25명 참여			

워크숍 취지	<p>본 워크숍에서는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소개되고 있는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및 콘텐츠 사업자 간 경쟁 질서 측면에 집중하여 살펴본다.</p> <p>이를 위해 국내에 도입된 여러가지 제로레이팅 요금제 사례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통신비 인하 효과 및 시장 경쟁 질서 영향을 분석하여 제로레이팅과 관련한 정책 논의의 방향을 짚어본다.</p> <p>그리고 통신비 인하라는 편협한 정책 목표 보다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 또는 보편적 인터넷 접근권 향상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 의식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려고 한다.</p>
--------	--

1.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발제)

- 물리적 차별이 아니라 경제적 차별
-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또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의 콘텐츠 사용에 소요되는 요금이나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비용의 부담 주체나 정산 기준 등을 미리 약정하여 제공, 데이터 스폰서라고도 부름

(1) 브로드밴드 시장 안에서 제로레이팅 분류

- 데이터 스폰서인 bundled free가 있고, 구독비와 데이터 스폰서를 상동하는 bundled subscription이 있으며 추가 비용 지불 후 데이터 스폰서를 하는 add-on이 있음
- 통신사 자사 또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operator-owned가 있고 비계열사 대상으로 하는 3rd party가 있음

(2) 제로레이팅 사례

- 해외
 - (네덜란드) T-mobile 음악 스트리밍 데이터 무과금
 - (미국) T-mobile Binge-on 동영상 데이터 무과금, AT&T Direct TV 동영상 데이터 무과금
- 국내
 - (SKT) 11 번가 데이터 무과금 포켓몬고 데이터 스폰서
 - (KT) 지니팩(추가비용으로 구독비+데이터무과금)

(LGU+) 비디오 포털(동영상 데이터 스폰서)

(3) 이용자 입장에서 혜택과 우려

- 데이터 스폰서로 인한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이 있지만 경쟁상황 악화 및 통신사의 자의적인 시장개입 및 타 시장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 특히 통신사 자사 또는 계열사 대상으로 그럴 수 있고 표현의 자유 제한 및 상업적 표현 우선, 차별대우 같은 우려가 있음

(4) 규제 현황

- 해외

(EU)

TSM regulation이 명시적 금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1년 후 BEREC 가이드라인 데이터 한계상황에서 물리적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와 같은 명시적 금지 유형 언급과 case by case 접근 방식을 사용

(네덜란드) 제로레이팅 전면 금지

(미국)

case by case 접근법

FCC AT&T에게 DirecTV Now 데이터 무과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 보냄

- 국내

(가이드라인)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및 트래픽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경제적 차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규제 사례) 행정당국이 KT의 다음 카카오톡 요금제에 대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행정지도 내린 바 있음

2. 제로레이팅 관련 규제 및 국내 대표적 제로레이팅 요금제 분석

(1) 제로레이팅, 새로운 먹거리 (류민호 패널)

- 통신사들이 제로레이팅을 왜 할까?

- 크게 보면 제로레이팅 사례 두가지 볼 때 콘텐츠 사업자들과 사전에 협의를 맺어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하거나 콘텐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프로모션하기 위해 통신사에 협의를 맺는 형태로 볼 수 있다.

- 콘텐츠를 통해 기존의 수익과 맞물려 콘텐츠 사업자들이 추가적인 이익을 대신 내주게 된다. 통신사의 미래가 달린 제로레이팅은 새로운 먹거리이다. 기존의 통신망에서 가진 지배력을 콘텐츠로 옮겨 콘텐츠 영역의 양상을 흔들어버릴 수 있다. 적절하게 이용자들의 요금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포장되어 있지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봐야 한다.

(2) 제로레이팅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 (이금노 패널)

- 통신사에 대한 이익모델이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다. 그렇지만 콘텐츠 제공하는 입장에서 다르지 않다. 콘텐츠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수익을 내는 사업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 그 주장을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 후생을 갖다 붙이고 있다. 제로레이팅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있다. 소비자 후생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것인가? 사업영역은 다르지만 기존의 측면들을 봤을 때 비슷하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충돌 지점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자들의 새로운 방법을 통해 이득을 취함에 충돌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3) 제로레이팅, 왜곡된 시장원리 (이상협 패널)

- 왜곡된 시장원리, 제로레이팅인 경우에도 통신사와 특수한 관계 또는 자회사, 계열사가 더 이득을 본다. 국내 시장에 여러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들이 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나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 한번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3. 국내 요금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제로레이팅을 다르게 설정해야 하는가?

(1) 영역 별로 다르게 봐야 한다 (이금노 패널)

- 전체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선례가 있지도 않지만 직접적으로 자사에 관해서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주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 데이터 요금을 구별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다.

(2) 제로레이팅 주도를 누가 하느냐 (류민호 패널)

- 글로벌에서는 비디오나 스트리밍 중심으로 제로레이팅 이야기 중이다. 통신사가 이득을 취득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긴다.
- 통신사들이 기존에 자기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자들과 협의하지만 통신사업과 콘텐츠사업은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르다. 통신사업은 제한적인 자원으로 경쟁하는 산업이지만 콘텐츠 사업은 다르다.
- 통신산업은 경쟁이 없는 산업지만 독점력과 지배력을 다른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를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통신사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제로레이팅을 통신사가 주도하느냐 콘텐츠가 주도하느냐가 중요하다.
- 제로레이팅을 규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통신사 주도로 가져갈 것인가. 기존의 망 투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숨쉴 수 있는 방안을 줘서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괜찮다. 빠른 망을 이용하니까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인가?
- 제로레이팅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싫은 것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치판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다. 통신사가 일정의 데이터 스폰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통신사가 조건에 대해 비용을 받지 않는 스폰서를 하는 것이 같지 않다. 데이터 사용하는 것이 도로 공사 같은 것이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을 해야 한다.

3. 향후 방향 및 정책 방향

(1) 스타트업의 중요성 (류민호 패널)

- 대형 사업자들 때문에 스타트업은 계임을 시작할 수 없는 형편이다.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덕분에 그래도 시장 경제가 건강하다. 정책 고려해주는 상황에서 이런 것도 고려해 주어야 한다.

(2) 정부의 노력 (이금노 패널)

- 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면 돌이킬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어떻게 전개 될지 살펴 봐야 한다. 다른 측면들도 봐야 한다.
- 망 측면에서는 망중립성을 이야기 한다. 데이터를 공공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이터를 사업자에게 맡기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 제로레이팅이라는 측면을 공공측면에서 정부가 활용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논의들을 통해 대중성의 심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3) 여러 측면으로 보자 (이상협 패널)

- 국내에만 포인트를 두지 말고 통신사를 떠나서 해외 사업자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 구글이 제로레이팅 같은 서비스를 갖게 되면 국내 시장이 존속될 수 밖에 없다. 진행 자체가 느리고 더딜 수 밖에 없다. 외부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질의

(플로어)

- LG U+ 사용하면서 비디오 포털 잘 사용하고 있다. 가격 경쟁을 통해 다른 기업들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류민호 패널)

- 무료여도 사용할 것인가? 서로 더 좋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별로여도 무료니까 사용한다고 하면 메커니즘이 무너지고, 더 안 좋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사업이 무너질 것이다.

(플로어)

- 그것이 시장 경쟁이고 충분히 콘텐츠 퀄리티들이 제공될 수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돼서 서민들에게 좋을 것이다.

(박지환 패널)

-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데이터 요금의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인지 콘텐츠 이용에 대한 구독료에 대한 경쟁이 촉발될 것인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플로어)

-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성장하고 없는 회사는 쇠퇴하지만 환경 자체가 공정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책의 역할이다. 통신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윤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으므로 이런 계열사나 자회사를 통한 계약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콘텐츠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각각의 기업의 전략에 맞게 사업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인가?

(플로어)

-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장이다. 자신들의 자신의 계열사에 대한 콘텐츠를 사용하면 돈을 안준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용자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현상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안 좋은 영향이 되어 시장에 고착이 되어 안 좋을 것 같다.

(이금노 패널)

- 망중립성 측면에서는 엄격하게 봐야하는 것 같다. 크게 두 가지로 봐야 할 것 같다. 이용자 집단 간에 비교해 이 서비스를 가지고 혜택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있을 수도 있다.

-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이득 보는 특정 이용자들이 평균적인 소비자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했을 때 규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인터넷을 둘러싼 생태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현재 예측하기 어렵다. 일부 서비스 집중될 가능성이 될 수있고 후에

통신비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독점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하는 이유가 그렇다.

- 하지만 망 사업 특성상 망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용자들을 확보할수록 비용이 떨어진다.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로레이팅이 무조건 안 된다라는 관점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공공적인 성격으로 볼 수도 있다.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5 보고서

세션명	블록체인 패러다임 : 정보 보안과 제도적 거버넌스			
일시	2017.9.15.(금) 13:30~15:00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소회의실 2	
참석자	사회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발제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패널	김경곤(고려대학교 정보보호융합학과)		김종승(SK텔레콤 Blockchain TF)
		민정식(한국인터넷진흥원)		박성준(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플로어	약20명 참여			

워크숍 취지	<p>사이버 해킹, 랜섬웨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인터넷 침해사고는 정보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표준, 제도, 정책 등이 필요하다. 이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정보보호 아젠다가 포함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핵심적 인프라의 강건성을 유지하고,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데이터의 흐름과 사용과정 전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p> <p>그러나 최근 인터넷 호스팅 업체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관리하던 서버와 5천여개의 사이트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이버보안의 취약성을 파고든 랜섬웨어 감염 사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커다란 도전을 제기하였다. ITU의 인터넷 보안 위협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430만개의 악성코드 발견되었고 웹사이트의 75%에는 보안패치가 없으며 사이버 공격의 50% 이상이 중소기업들(SME)에 집중되어 있다.</p> <p>이런 상황에서 랜섬웨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응용한 데이터의 관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경제 포럼은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로 선정했다. 블록체인은 사물인터넷(IoT) 보안에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 및 공공 산업 등ICT 인프라에 널리 활용될 것이다. 보안성 높은 공공 거래장부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효율성에 주목한 금융기관들은 중앙집중형 서버에 모든 거래 기록을 저장하는 기존 방식에서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나눠 분산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IT 기술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다.</p> <p>은행이 분산형 디지털 장부(distributed ledger)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공인인증서 시스템은 사라지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면 랜섬웨어의 공격이나 온라인 뱅킹의 해킹은 어려워질 것이다. 은행들은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보안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므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영향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블록체인은 신뢰성을 검</p>
-----------	---

증하는 인증 시스템을 바꿀 것이다. 라우팅 인증(RPKI), 공개키 암호화방식의 전자 서명 메커니즘을 도메인 이름 시스템(DNS)에 도입한 DNSSEC 등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 발달의 기반이 된 TCP/IP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폭넓은 조율이 필요한 기반 기술이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관리 시스템도 달라지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사이버 보안과 인터넷 거버넌스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고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의 도입과정에서 여러 기술적 제도적 이슈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멀티스테이크 홀더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공론화 할 필요성이 있다. 블록체인은 기존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1. 퍼블릭한 용도의 블록체인, 블록체인 거버넌스 논의 (최은창 발제자)

- 퍼블릭한 용도의 블록체인, 진정한 인터넷으로써의 P2P 네트워크의 활용 가능성
- 산업화 자체로 비트코인 뿐 아니라 블록체인의 공공영역으로 확장해가야 함
- 인터넷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하나의 산업적 혁신의 모멘텀이 되었던 것처럼 블록체인 역시 제2의 인터넷 혁명이 될 것
-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1) IGF for Public Policy

-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멀티스테이크홀더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
- 2005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개최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SIS)의 결과
-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의 72항에 따라 2006년 아테네에서 IGF가 처음 개최
- 이후 UN차원에서 각 국가 및 지역별로 IGF가 해마다 개최
- 인터넷 거버넌스와 달리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2) 블록체인 패러다임

- P2P 네트워크 : 진정한 인터넷, 탈중앙화의 힘과 사람들의 협력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위키피디아, 오픈소스 네트워크 등)
- 블록체인은 P2P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거래 수수료 시간 비용 절감 및 감독, 규제 비용 절감 가능. 전세계 극빈자 수를 줄일 수 있음
- 비금융분야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보관, 디지털 인증, 스마트 계약, 물류 추적 관리 가능
- Smart Contract의 실현 : 거래 비용의 급감. 그러나 시스템 실패의 경우 누가 나서는가? 또한,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 전자정부, 정부공공, 행정 서비스 : 블록체인 활성화위한 기술 표준화 및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

(3) Key Question

- 블록체인 활용은 금융영역과 비금융영역이 존재
- 블록체인의 활용사례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물류, 인증, 스카트 계약간의 관계
- 현재의 인터넷 보안, 인증 시스템에 블록체인이 미치는 변화와 영향력 전망?

- 블록체인은 해킹되지 않고 안전한가?(앤드 포인트 보안, DDoS, 제로데이 취약점, DAO 사건)
-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의 방향?
- 블록체인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
- 블록체인과 적합한 제도적 거버넌스, 법제도의 변화 방향은?

2. Blockchain 범용기술, GPT로 가능한가? (김종승 패널)

- 산업혁명에 기반이 되는 범용기술로 과연 블록체인이 성립하느냐?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사회경제 혁신 : 블록체인은 새로운 사회질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 AI, IoT 데이터 및 기술과 블록체인이 결합하고, 서비타이제이션 모델로 드러날 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 것

(1) 블록체인 효과

- 신뢰 : 거래가 발생하는 전 프로세스에 걸쳐 여러 이해관계자의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모든 영역에서 비용 효율적인 신뢰 기반 거래 환경 제공, 과거 중앙 집중적인 기관이 신뢰를 담당했다면 달리 분산된 모든 주체 사이의 신뢰가 가능함
- 정보보안 : 참여자간 정보 공동 소유로 부정행위 가능성이 낮음. 보안이 취약한 영역에서 기존 방식 대비 탁월한 보안성 제공 가능. 과거의 실 패 케이스에 대해 대안이 될 수 있음
- 투명성 : 모든 거래 기록에 대한 공개적 접근 가능, 거래 양성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고, 각종 규제 비용 절감에 활용 가능, 정보의 격차, 불일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케이스

- 인증 : 기존의 중앙집중 방식의 ID 통합시도에서 발생된 대규모 투자, ID 중복, 이중 유지보수 비용 지불의 이슈를 해결 가능. 올해 10월 공동사설인증서 개발로 기존 공인인증서 문제 해결 가능
- 물류 : 관세, 항만청, 여러 공공기관의 20여개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종이문서 행정을 디지털로 변환하면 신뢰성 증가. 규모의 문서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만 해도 비용이 20% 정도 절감됨, 관세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임. 중기적 관점에서 상용화 될 것
- 푸드 체인 : 유통, 공급망 전반의 추적 역량,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 먹거리에 대한 사람의 관심, 신선한 식품의 유통경로, 생산지, 부패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해서 확인가능, 실시간 감시를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한 콜드체인 확인(중국 Wal-Mart와의 협력)
- 에너지 : 민간에서 P2P로 전력 거래 가능(블록체인을 활용, 거래 시스템과 기존 전력 계통을 상호 연계), 전기차 충전 지불 시스템(중계자 없는 무계약 지불 시스템 개발 - 충전, 지불 프로세스를 충전소를 상호 작용하여 결제 절차를 저동으로 관리)
- SK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 : 전기화재 감정/감식을 위한 아크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방화원인 규명 및 방화지역 파악(법적 참고자료로 사용)
-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건강 데이터 수집 : 개인의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험료 할인 적용으로 스마트 계약 체결 지원
- 블록체인을 통해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신뢰관계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가능,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로 중복되지 않는 똑같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3) 커먼스(Commons)경제

- 암호화 화폐: 각국의 규제들이 강화됨에 따라 투기성향의 목적은 점점 투명해 질 것
- 블록체인이 초래할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자본 조달 시달에서의 변화) : 2017년 상반기 VC(벤처 캐피탈)

- 보다 ICO로 자금 조달한 시장이 훨씬 큼. 상당부분 허수이고 사행성이지만, 간혹 대단한 기업이 있음
- 커먼즈 경제 : 공유경제와는 다른 개념, 공적 공유가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면 사회 인프라나 간접 자본이 커먼즈의 성장을 통한 혁신이 가능, 수평적인 협력을 통한 자원의 새로운 생산, 소유, 분배, 운영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

(4) 거버넌스와 규제의 상호 보완성

- 블록체인은 법과 규제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기술임. 거버넌스와 규제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
- 여러 사회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의 보완이 필요
- 테스트베드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서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할 것

3. 블록체인 확산의 어려움 (민경식 패널)

- 탈중앙화, 분산화된 구조 등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한 과정은 매우 어려울 것

(1) 블록체인 확산이 어려운 이유

- 이상적인 기술이지만, 현실적으로 참여자들의 노력이 필요함
- 현재로서는 실무적 도입이 힘들 것
 1. 실제품을 바꿔치기 할 경우의 문제점 : 포장지 속의 내용물을 신뢰할 수 없음
 2. 기업의 연합체 중 해킹이 가능한 위협 존재
- 기업들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조의 경우 : 빅브라더를 견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
- 개인의 데이터 주권 사회가 올 것 :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사람간의 합의를 고민해야 함

4. 블록체인의 실제 적용과 확산의 가능성 (박성준 패널)

- 현재는 블록체인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에는 가능성이 있음

(1) 블록체인 확산의 가능성

- 기술자가 바라보는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면도 좋으나, 인문학 및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많아 졌으면 함
-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국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있는,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대와 노력을 하고 있음

5. 블록체인과 보안 (김경곤 패널)

(1) DAO 해킹

- 최근 DAO(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투자기관)의 취약점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해킹 당한 사례가 있음
- 환불을 계속하면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취약점(Recursive call Vulnerability)을 악용하여, 하드포킹을 통해 해커 돈을 모두 빼돌려 버림
- 블록체인은 분산 기술이기 때문에 누가 나서서 해결할 것인가?

(2) 블록체인 해킹

- 개인보다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서 본격적인 해킹 시작함. 나름의 보안 기술도 어렵지 않게 해킹 가능
- 공격 유형 : Attacks against blockchain infrastructure(Mt, Gox 사례, Bitfinex 해킹), Attacks Against Code (Dao), Attacks against blockchain sites(inputs.io 사이트 해킹, steemit 해킹), Attack against hot wallet

(블록체인 지갑 해킹, VC Bo Shen 해킹, Ransomware), Attacks against cold wallet(Bitfinex 해킹), Attacks against node(블록체인 노드 공격, Geth node Crash, 크립톤 51% attack)

- 특히 북한에서는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시도 중임
- 블록체인의 암호화도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해킹 가능(ECC 알고리즘의 취약성) : 10년 이내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 ex) NSA : 양자 컴퓨터에 대응 가능한 암호 알고리즘 개발 중

6. 블록체인의 안전성 및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필요성 (박성준 패널)

- 가상화폐의 보안 문제는 가상화폐 절도일 뿐 위조나 변조가 아니다

(1) 블록체인의 안전성

- 현재 발생한 가상화폐 대상 해킹은 블록체인의 위조나 변조가 아닌 보관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절도
- 양자컴퓨터가 나오면 전세계적 보안문제가 될 것. 모든 전자정보의 보안 알고리즘이 붕괴됨. 따라서 양자 컴퓨터를 예로 들어 블록체인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비약임
- 블록체인 관련 보안 방식이 개발 중
 1. 비트코인 시큐리티 모델의 안전성
 2. 프라이버시(남에게 준 내 정보를 내가 통제 가능성)가 내제된 방식

(2)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필요성

- 거버넌스에서 해킹에 대한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블록체인은 새로운 컴퓨터고 새로운 네트워크이며, 인류의 가치 번영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블록체인이라는 혁명적인 기술을 사용할 때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의 합의가 필요함

7. 마무리 (최은창 펠로우)

- 아크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증명을 해야 함
- 블록체인 시스템이 보편화된다면 좀 더 투명해지고, 혁명이 될 것이며, 앞으로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

질의	(플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체인이 굉장히 파격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것이 인터넷 위의 하나의 계층인지 궁금하다.
	(박성준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HTTP 프로토콜 정도의 인프라 개념으로 바뀔 것. Web 3.0과 깊이 연계 될 것이다.
	(플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은 기술자가, 거버넌스는 정책자가 각기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거버넌스가 되고 하나의 일관성이 형성되려면 둘 사이의 대화가 필요하다.- 블록체인을 거버넌스 레벨로 이야기하려면 서로 간의 대화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 같다.

(민경식 패널)

- 블록체인 오픈포럼이 이미 존재하며 다양한 분과가 있다.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분과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블록체인 법제 연구회의를 만들 예정이다.

(플로어)

- 블록체인에 관련된 법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 법을 통한 정부의 블록체인의 통제는 블록체인의 정신에서 벗어난다. 다양한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있는 블록체인을 왜 법으로 통제하려는 측면이 있는지?

(박성준 패널)

- 국내에서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 크게 3가지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블록체인 기본법, 암호화폐법, 스마트 계약법

(최은창 패널)

- 블록체인법은 규제라기보다는, 인프라를 조성해서 그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6 보고서

세션명	Future of Internet Governance in Asia Pacific Region and Korea - National/Regional IGF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나?			
일시	2017.9.15.(금) 13:30~15:00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소회의실 5	
참석자	사회	김예슬(KAIST)	발제	이동만(KAIST)
	패널	Amrita Choudry(CCAOI) - Remote		Kelvin Wong(ICANN)
		Pablo Hinojosa(APNIC) - Remote		안정배(APSIG)
플로어	오병일(진보네트워크)			
플로어	약 10명 참여			

워크숍 취지	<p>한국 인터넷 도입 이후의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작동 방식에 대해 역사적으로 되짚어보고, 어떠한 부분이 잘 되었는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였는지 되돌아본다. 이와 함께 그 범위를 넓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인터넷 거버넌스 역사, APrIGF, APSIG, 인도, 중국, 일본, 호주 및 그 이외 지역에서의 IGF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아젠다를 공유하고 이전 10년간의 International Level IGF 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짚어보며 IGF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p> <p>이와 함께 현재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방식 -인터넷 관련 사회과학 및 다양한 학문적 파생에서부터(이는 기술에 관한 사회과학 담론과도 연결될 수 있다.)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를 돌아보고, 지역, 국제 IG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돌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본다. 특히 이는 앞서 언급한 타 지역에서의 IG 현황을 짚어보고, 패널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한국만의 IG가 갖는 특성, 그리고 한국의 IG가 국제적으로 맡을 수 있는 역할 등을 논의하며 큰 그림 속에서의 한국 IG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히 multistakeholder 모델이 각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각 지역기구들이 각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며 IG 자체가 시민 사회 및 국제 사회를 serve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 IG의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p> <p>이를 기점으로 미래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및 국제 IGF가 향후 10년간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p>
-----------	---

I. 패널 토론 주제 및 배경

이 세션은 보다 메타적인 관점에서 인터넷거버넌스와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에 접근한다. 구체적인 세션 내용으로는 1) 현재의 인터넷거버넌스가 채택하고 있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정부 포함)이 국내적으로 또 아-태 지역 수준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2) 시민사회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인터넷거버넌스 모델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대해 3) NGI 및 RGI에서 논의된 또 논의될 이슈들에 대한 것이다. 세션 진행은

김예슬(KAIST)과 4명의 패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전반적인 패널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를 포괄하기 시작한 현재의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이 인터넷거버넌스가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수행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2. 시민사회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인터넷거버넌스모델의 영향은 무엇인가?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3. IP 주소자원 거버넌스, DNS 또는 망중립성 이슈를 비롯한 어떤 종류의 문제가 NGI 및 RGI에서 논의 되었으며, 올해 NGI/RGI에서 논의 된 내용과 논의될 내용은 무엇인가?

II. 인터넷 거버넌스의 영향 및 다자간 모델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

(1) 멀티스тей크 홀더 모델의 의의 (Amrita Choudry)

- 멀티스тей크 홀더 모델은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이 오래걸리나 단점이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정부 중심으로 정책 결정을 하지만, 각계 분야에서 의견을 내어 논의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장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그 인구학적 규모로 봤을 때,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참여에 있어 여러 장애물이 있지만, 진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역량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2) 멀티스тей크 홀더 모델과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Pablo Hinojosa)

- 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시의 적절하고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하며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인터넷이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거버넌스 논의에 참여한다. 포럼은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장소이지,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IGF 결과물에 대해 비난하지만, 만약 IGF가 정부의 방식대로 운영하게 된다면 그 역할은 지금과 다를 것이다. 다자간 논의는 정부주도 과정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을 사용하는 단체는 많지 않지만, 미래의 UN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멀티스тей크 모델은 의사결정이 복잡하고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IGF는 하나의 포럼이며 논의의 장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를 할 뿐이다. IGF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나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IGF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도움이 될 것이다.

(3) 세계 각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현황 (Kelvin Wong)

-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논의된 결과가 사회 특정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참여 당사자들이 공유하는 관심사 및 권리 등이 있어야 하고, 논의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결책을 낸다는 것 자체보다 해결책을 내는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IANA 이양과 같은 경우는 글로벌 멀티스тей크 홀더의 한 가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모범 사례를 설명하겠다. 일본은 Internet Governance Japan이라는 곳에서 두달에 한번 씩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후원을 받고자 했다. 이 프로세스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참여자들이 그 내용을 전달하고 공유함으로써 상향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4)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오병일 의장, 김예슬 연구원)

- 한국정부도 점점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수많은 위원회를 때문에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몇년 전 한국 정부에서 학계, 업계, 시민사회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망중립성 정책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다.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정부에서 이미 시민사회 대표가 있다고 거절했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정책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는데, 기사에는 명단이 없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를 하였으나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며칠 후 보도자료에서 국민 의견 수렴과 정

보공개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이란 것은 단순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한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 및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원칙을 공유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이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인지, 특히 디지털 환경이 어떻게 그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사람들이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열정적이었으며,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이슈가 많았었다. 다양한 논의의 장과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실상 토론 그룹은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사결정과 시민사회의 의사결정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상향식 의사결정이었다. 한국 사회의 문제 뿐만 아니라 IGF의 경우에도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당사자들이 대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Amrita 가 언급한 3가지 이슈와 같이 정부중심의 의사소통 구조, 언어장벽, 민간기업들의 단기적인 목표 추구 등이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 구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질의

(안정배, KIGA, Floor)

-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관심 및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Regional 및 Global Level을 논외로 하더라도 접근성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National level에서 가능한 부분인지 의문스럽다. 적용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Kelvin Wong, ICANN, Panel)

-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이 잘 적용된 사례는 있어도 그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국내적으로는 한국 내부의 논의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네팔, 스리랑카 등 다른 나라 IGF에 많이 참석해봤는데, IGF라는 틀 자체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커뮤니티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관심이 높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서로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스리랑카 IGF 참석 당시, 공용어가 2개라 자국 내 논의에서도 번역이 필요했었는데, 한국은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Panel)

- 한국 내에서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적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망중립성,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KrIGF 는 다른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너무 많은 곳에 있다는 것이 고민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에 관한 포럼은 전국 어디서나 매일 열리고 있는데 KrIGF 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에 대해 논의할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특히 KrIGF는 학술적인 토론을 넘어 실제 정책과정으로 연결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보영, KISA, Floor)

- KISA 입장에서의 고민은 KISA가 KIGA와 IANA 등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어떻게 포장을 하는지이다.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가 고민이다. 주요 서양중심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각 국가의 고유한 관심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마다 다른 관심사를 어떻게 Regional, Global Level로 연결 시킬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Pablo, Panel)

- 회의에서 각 국가를 대표하는 것처럼 누가 각 이해관계자를 대표할지가 문제가 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 대표가 잘 정해져야 할 것이다.

(Amrita, Panel)

- IGF가 지역별 이슈를 잘 개발해서 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는 망중립성 위원회가 있고, 지역별로 논문을 공모했었는데 각 이해관계자들이 논문을 선정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IGF에서는 실제적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작년 IGF에서는 사이버 안보 등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가 도출되기도 했다.

(김예슬 연구원, Panel)

- IGF 내에서 이슈가 없는게 아니라 너무 많은 이슈가 있어서 문제인 것에 동의한다. 특히, 일반 대중 보다는 학계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여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GF와 같은 공론의 장이 세계 각지에서 많이 생겨나고 논의가 진행되면서 KrIGF도 그러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각 나라별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적합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인터넷 자체가 기술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다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몇몇 주요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동만 교수, Panel)

- (1) 모든 사람들은 다른 이해관계와 의제를 가지고 있지만 틀린게 아니다.
- (2) 지역간 다른 의제가 있고, 국가별 기술/사회에 따른 의제가 있다
- (3) 정보공유의 장을 확대해서 의견 공유를 지속해야할 필요가 있다.

**패널
입장
요약**

(1) Amrita Choudry (CCAOI)

- 멀티스тей크홀더리즘에서는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아시아 내 각 국가별 차이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 역시 존재함. 참여함에 있어서 언어장벽 등 어느 정도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함.

(2) Pablo Hinojasa (APNIC)

- 사무총장 Paul Wilson이 말하길 멀티스тей크홀더리즘은 1. 시의적절해야 하며 2. 정확해야 하고 3. 리스크가 낮아야 하고 4. 많은 동의를 얻고자해야 하며 5.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면 안된다고 함. 이렇게 멀티스тей크홀더 입각해서 규칙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지정하는 것은 힘든 과정이지만 **IGF**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토론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

(3) Kelvin Wong(ICANN)

- 멀티스тей크홀더리즘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1)논의한 결과가 사회의 특정부분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2)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관심사나 권리가 있어야 함 3)이러한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함. **IANA Transition**이 **글로벌 멀티스тей크홀더**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임.

(4) 오병일(진보네트워크)

- 멀티스тей크홀더가 단지 다양한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됨. 브라질에서 열렸던 인터넷거버넌스 회의에서도 개방성, 투명성, 실질적 참여 등에 대한 원칙들을 선언했었음. 멀티스тей크홀더는 이러한 **원칙들을 공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멀티스тей크 모델이 새로운 모델**이라기보다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더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5) 김예슬(KAIST)

한국인터넷거버넌스 포럼 같은 경우에 하향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그리고 이것은 비단 한국사회의 문제뿐 만이 아니고 **IGF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임. 이러한 문제들 중에 또 **지역 내에서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함.

Ⅲ. 결론

이해당사자들 간에 각자의 IG 이슈가 있고, 지역별로 또 국가별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함. 따라서 그러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임.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7 보고서

세션명	플랫폼 서비스와 시장 갈등 해결방안		
일시	2017.9.15.(금) 15:15~16:45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소회의실 1
참석자	사회	최성진(인터넷기업협회)	
	발제	이현재(우아한형제들)	석훈(직방)
	패널	정미나(서울혁신센터 리빙랩)	심동욱(한국인터넷진흥원)
플로어	약 25명 참여		

워크숍 취지	<p>기존 오프라인 시장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그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O2O 서비스들이 출현하면서 시장이 확장되기도 하였지만, 오프라인 사업자, 특히 소상공인들과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공유경제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시장 갈등으로 규제받기도 했다.</p> <p>O2O, 공유경제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시장 기존 사업자들의 갈등 이슈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p>
--------	--

1. 플랫폼 서비스와 시장 갈등 해결방안 : 이익의 균형 문제

(1) 배달의 민족과 O2O 서비스

- 바로 결제 수수료 없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먹을 수 있음

(2) 플랫폼 서비스 출현과 시장 변화

- 플랫폼은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도와주는 기반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의 형태도 포괄하는 개념인 것
- O2O(online to offline, on off mix) :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결과 2009년 아래 급증

(3) 배달앱과 시장 갈등

- 갈등과 논란 (업주편)

배달앱 수수료 문제. 카드 수수료 3.3% 외부결제 수수료 때문에 갈등이 있음

또한, 댓글 서비스로 이용자의 알권리와 사업 안정성에 대해 대립을 이루는데 방송통신시민위원회에게 맡김

- 이용자 갈등과 논란

“배달의 민족으로 시켰더니 치킨이 하나 없어요.” 등 이용자들의 불만폭주 해서 정책을 마련함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인식이 낮기 때문에 식약청 등 같이 위생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마련

(4) 플랫폼 전략과 상생

- 배민아카데미 : 장사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직접 모셔서 배민 아카데미를 이뤄 장사 팁을 알려 드림

- 장사 수업 : 장사 잘되기 위한 수업

- 배달 대상 : 배달하시는 분들의 사회적으로 낮게 보기 때문에 1년의 한번 서로 응원하는 행사를 마련

- 민트라이더 : 무질서한 배달 오토바이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교육

- 청결왕 : 직접 컨설팅 해주면서 청결을 위한 정책

(5) 미래

- 플랫폼 서비스가 잘 되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함
- 정책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 이용자, 그리고 산업 전체 즉 푸드테크를 잘 이끌어 나가면서 앞으로 변화되는 시정에 맞춰나가야 하는지 고민
- 오토 서비스의 미래는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으로 끌어들이 많은 갈등들이 발생함.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 풀어 나가는게 해법인 것 같음

2. 플랫폼 서비스와 시장 갈등 해결방안 : 직방과 신뢰성 문제

(1) 직방과 O2O 서비스

- 원룸,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까지 주거형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 허위 매물 근절하는데 대부분의 정책을 두고 있음
- 안심중개사와 허위매물 out 프로젝트 중점

(2) 직방 앱과 시장 갈등

- 공정거래 위반 시 탈퇴 정책
- 광고비가 비싸지 않느냐는 불만에서 종이 광고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음. 또한, 예전에는 입지 좋은 부동산이 더 이득이었음. 직방 플랫폼을 통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됨

(3) 지향 - 상생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 플랫폼의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제공해야 함
- 중개 서비스의 가치를 존중

3. 플랫폼 서비스와 시장 갈등에 대한 의견 - 노동시장의 문제, 제도적인 문제

(1) 정미나 패널

- 배달의 민족은 댓글 때문에 이용하고, 직방은 생각지도 못한 지역들의 매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중이다. 물론 플랫폼 기업들의 좋은 정책을 알지만 영세업자들에게 나쁜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 플랫폼 기업들의 갖고 있는 독점적인 횡포 때문에 막연하게 죄책감 있다. 이런 의식에 대한 해결방안을 줘야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한계, 특히 노동문제에 관련돼서 한계가 있다. 거버넌스를 통해 규제 있어서 사회적인 신뢰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2) 심동욱 패널

- '오토'라는 범주가 넓어졌다. 애완동물 호텔 등. 앞으로도 넓어질 것이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배달의 민족이나 직방은 리스크가 덜한 영역에 위치한 것 같다.
- 기존에 존재했던 어떤 것을 대체하는 것에서 위법이나는 문제에서 시작한다.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유 경제형 오토 서비스에서 많이 발생된다. 오토 서비스의 진입 자체가 어렵고 기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같다. 오토 서비스를 늘려야 좋지만 기존에 있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을 국가나 공동체 단위에서 정해야 하는 것에서 오토 관련 서비스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 이에 관해 지금 당장 하던 사업은 무시하고 가면 안 된다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천천히 가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규제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질의

(플로어) 공공정책 문제에 대해 4가지 질문

1. 이용자의 편리함 때문에 플랫폼 서비스 쏜다. 하지만 공급 측의 기업에게는 플랫폼 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질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잘되는 기업도 있고 망하는 기업도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실업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 정책적 문제가 아닌가?
2. 모든 규제를 새로운 환경에서 논의할 것인가?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해결하기 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3. 노동의 문제. 배달 같은 경우 과편화된 노동 개별적으로는 많은 수익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4. 효율적인 광고일 수도 있지만 이용자 선택 왜곡 문제가 있다.

(이현재 패널)

- 시장의 변화에 따라 경쟁이 과도화되고 플랫폼이라는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하게 여러 정보들이 통하는 채널로 사용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
- 따라서 어떻게 설계를 할지 많이 고민해야 한다. 전국의 상인들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언젠가는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마이크로하게 시장 노하우 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정부에서는 규제나 정책을 통해 저희와 같이 채널을 다양하게 만들어 정보 유통을 하며 협력하고 싶다.
- 노동에 관한 문제도 저희가 어떻게 진척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그런 부분에서 협의 채널이나 이런 공론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들을 계속 경청해서 잘 만들어 가겠다.

(플로어)

- 부동산 서비스 노이즈가 있는데 플랫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시장에 진출하셨는데 1인 가구 위주로 맞물려 젊은 층이 많이 써서 직방이 성공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가구 위주인데 직방에서 통할까?

(석훈 패널)

- 비싼 광고비를 낸 광고가 신뢰성이 높은가? 실제 쉽게 노출되는 광고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 이용자들이 더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 직방은 원룸, 오피스텔 위주로 시작했지만 아파트로 진출했다. 지켜볼 일이지만 직방이 나오기 전에 네이버 부동산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부동산을 알아봤기 때문에 충분히 사오십대가 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금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더 신뢰성에 초점을 둘 것이다.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8 보고서

세션명	디지털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거버넌스 모색		
일시	2017.9.15.(금) 15:15~16:45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소회의실 2
참석자	사회	허광준(오픈넷)	
	패널	민노씨(슬로우뉴스)	구분권(사람과디지털연구소)
		정은령(서울대학교 팩트체크센터)	
플로어	약 15명 참여		

워크숍 취지	<p>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가짜 뉴스를 비롯한 디지털 허위정보는 앞으로도 인터넷의 음지로 남아 정상적인 소통을 방해하고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며 꾸준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p> <p>이에 대하여 사회 각 그룹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내어놓고 있는데, 단일한 그룹의 접근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p> <p>이 워크숍에서는 인터넷 업계, 언론학계, 국회,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그룹이 준비하거나 시행중인 해결책을 검토하고, 바람직하고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 방식을 모색해 본다.</p>
--------	---

1. 팩트체크 (정은령 패널)

- 가짜뉴스를 대응하는 방법 : 팩트체크

(1) 협업 네트워크

- 협업 네트워크 : 서울대는 플랫폼 제공하고 언론사는 팩트체크한 내용을 업로드하며 협업
- 팩트체크의 배경 : 서로 진영마다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므로 이용자는 누가 진실인지 파악하기 힘들
- 언론의 자유를 침해 가능한 국가 기관이 아니라 비정치적인 주체가 팩트체크 및 공론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 그 안에서 언론의 교차 검증으로 신뢰성 있는 팩트 제공을 위함
- 팩트체크의 이상적인 목표 : 저널리스트들에게 팩트를 체크함으로써 신뢰받는 언론이 되는 것, 이용자에게 이견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수기의 능력을 길러지도록 하는 것

(2) 전문가 모델의 한계

- 팩트체크 모델 : 1. 현재 전 세계적인 팩트체커나 저널리스트 같은 전문가 2.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화된 팩트체킹 3. 대중들의 클라우드 소싱 팩트체킹(위키 등)
- 자동화된 팩트체킹은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터 구축이 되지 않아서 이제 시작해서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판단
 1. 기술적 어려움 : 데이터 구축이 안 되어 있음(우리나라는 자연어 처리가 어려움)
 2. 자동화된 팩트체킹을 하더라도 인간의 최종적인 판정이 필수(전문가들의 팩트체킹하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필요)
-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사이에서, 우리가 좋은 정보가 없다면 쓰레기통이 될 것

- ex) 2016년 팩트체킹을 했으나 트럼프가 당선됐음. 이용자들의 무력감은 누가 해결하나?
-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로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대신 팩트 체크를 해 줌

(3) 팩트체크의 중요성

- 기자들에게 있어서 팩트체크의 부가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함
- ex)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언론이 확인해야 함. 전통적인 언론에서 하지 않았던 일
-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올해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 : 156명 참가, 그만큼 팩트체킹 자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국제 팩트체킹 연대에서의 준칙 : 불편 부담성, 투명성
- 팩트체킹의 그룹 중 워싱턴 포스트의 준칙 : 우리는 좌든 우든 정확하지 않은 발언에 주목하며 불평부담하고 비난과적어도록 노력한다. 팩트체크 이용자들이 팩트체크의 출처에 찾아가서 확인할 때도 정확해야 하고, 당시의 팩트체크가 잘못됐다면 공개적으로 수정이력을 남겨야 한다, 재원도 정확히 밝혀야 한다.
- 불편부담성이나 투명성은 쉬운 일이 아님. 한국 언론은 어떤 쪽으로든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함
- 또한, 익명인용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이 보완된다고 하면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
- 최근 팩트체크 결과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여 7월 말에 발표함 : 19대 대선기간의 팩트체크 이용자 중 바람직하다 56%, 신뢰할만하다 46%, 부정적인 의견 15~16%
- 최초 팩트체크 실험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음
- 한국 언론이 시장의 위기, 신뢰의 위기에 봉착해 있음.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팩트체크, 팩트체크 수준향상 필요 :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형식실험이라기 보다는 저널리즘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고, 한국 언론의 시장의 위기, 신뢰의 위기를 해결하는 의미 있는 실험과 시도가 될 것

2.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인가? (민노씨 패널)

- 가짜뉴스의 시공간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 미국의 가짜뉴스와 한국의 가짜뉴스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만약 박정희 시대에 가짜뉴스 논의가 있었다면 그 가짜뉴스는 어떤 형태였을까?
- 가짜뉴스가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의 입을 틀어막는 빌미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1) 가짜뉴스의 개념

- 우리나라에서는 일인 미디어 시대에 누구나 디지털을 통해 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생산자의 차원에서는 언론인과 아닌 자를 나눌 필요는 없음
- 뉴스를 생산하는 자가 허위정보를 생산하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인지하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데, 그렇다면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드는 가?
- 특정 단체나 개인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나 타인의 금전적인 이익의 목적을 위해, 마치 기성의 언론이 만든 것과 같은 외관을 띠도록 만든 콘텐츠를 가짜뉴스라고 정의. 그러한 가짜뉴스 정의의 토대 위에서 거버넌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함
- 우리나라의 가짜뉴스의 예(반기문 사례)-> 반기문은 당시의 스스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 시민으로써 토론하는 신분이 아니라, 공적으로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자, 스스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노출하고 싶은 자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다양한 각도의 정보를 얻고 싶어 함
- 공적인 자리에서 찍힌 사진들, 말들을 의도적으로 언론에서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쓰면 당연히 안 되지만,

이것 또한 모든 것을 포괄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적인 인물이 가짜뉴스를 빌미로 해서 본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항변을 인정해야 하지만, 반대로 국민의 알권리, 언론이 취재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떤 것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큰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2) 가짜뉴스와 관련된 입법 시도

- 가짜뉴스와 관련된 입법 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인가? 정보의 유통을 위한 행동인가? 언론과 사업자를 위해서 그러한 것을 입법을 시도하는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입법을 시도하는가?
- 국민의 수준이 높지 못한 공동체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가짜뉴스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
- 가짜뉴스가 문제시 되는 대표적인 상황
 1. 선거 : 규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인가? 그러나 공직선거법 상에 후보자 비방죄, 허위사실 유포죄가 이미 존재함. 아울러 이 법에 한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음
 2. 비선거 기간 : 형법, 정보통신망법에서 가짜뉴스 콘텐츠를 이미 규제하고 있음. 외국과는 다르게 사실을 이야기한 것까지도 명예훼손으로 형법 규제가 가능
- 민간의 영역에서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토론하고 이것을 우리들 스스로 규제하려는 노력은 권장해야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입을 탄압하려는 시도는 막아야 함

(3) 가짜뉴스와 관련된 입법 시도의 예

- 민주당 안호영 의원 ->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의 사회적 비용이 한 해에 30조 정도라는 예시를 들어서 입법시도를 한 적이 있다. -> 잘못된 전제위의 엉터리 보고서다. 엉터리 보고서를 통해서 입법하려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 한국 언론에서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사실 확인 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 베껴 쓰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 법을 만든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이런 일은 탈피하고 가짜뉴스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3. 가짜뉴스나 허위뉴스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방식 (구본권 패널)

- 왜 요즘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문제가 되는가?
- 우리는 여전히 허위정보의 세상에 살고 있다.
- 기술과 법으로 가짜뉴스를 막을 수 없을까?

(1) 과거와 오늘날의 가짜뉴스 차이점

- 과거에는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했음(유언비어처벌법 등). 가짜뉴스에 한계가 존재했음
- 지금은 가짜정보라는 것을 차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움. 우리가 상당히 개인화된 도구를 쓰고 있기 때문
- 과거에는 기성 미디어지만, 현재는 개인 미디어 사회이기 때문에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큼
- 가짜뉴스가 현실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음. 예전에는 루머를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주목받지 않았음
- 과거에는 메스미디어가 팩트체크 후 방송되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걸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오늘날은 마이크를 쥔 사람 조차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게 현실
- ex) 트럼프가 CNN을 가짜뉴스라고 언급함. 해당 사건은 공개 방송으로 중계가 되어버림
- ex) 박근혜 변호인이 가짜뉴스를 가지고와서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

- ex) 강남구청장은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음

(2) 가짜뉴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과연 기술로 가짜뉴스가 제대로 걸러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임
- 언론이 보도하는 것이 가짜뉴스인가? 이것은 다른 관점임. 부정확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을 단순 중계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가짜뉴스가 거짓정보를 뉴스의 형태를 포장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확산시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뉴스기사에서 제대로 된 가짜뉴스는 없음
- 대부분의 가짜뉴스 포털을 통해서 유통됨
- 한국의 가짜뉴스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루머성 정보가 뉴스처럼 포장되어 다니는 것. 조작 정보는 아님
- 가짜뉴스 정보의 폐해라기보다는 허위정보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음. 가짜뉴스라기 보다는 부실한 정보
- 역설적으로, 우리는 현재 허위정보를 판단하기 가장 쉬운 세상에 살고 있음. 누구라도 어느 때보다 쉽게 정보의 출처와 관련된 사항들의 출처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확인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도구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농락할 수 있음
- ex) 국정원이 가짜뉴스 최대 생산지였다는 것, 마케도니아 소년들을 비롯해서 미국 트럼프 진영에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사람들이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게으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
- 사기를 막는 방법이 기술과 법으로 가능한 것인가?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 혹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임.
- 기술적인 방법과 법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장벽을 높이 쌓고 정교하게 검증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침해사고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좀 더 정교한 사기 기술이 나오게 되어있음. 이것을 기술로 막을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듦
- 물론 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기술과 법으로 지킬 수 있다고 인정함
- 거짓정보를 과연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
- ex)미네르바 헌법재판소 결과, 부분적으로 허위가 담겨있는 정보에 대해 처벌할 수 없음
- 보도를 통해서 100%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보의 오류에 대해 처벌할 수 없음
- 지금의 가짜뉴스의 문제는 정보를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는 세력들이 기술과 플랫폼을 악용하는 것
- 디지털과 SNS를 이용할 때 다수의 이용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다. 인지적 습관 때문에 가짜뉴스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 디지털 시티즌으로써 모든 정보를 쉽게 중계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황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학교에서 시민의 능력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함
- 가짜뉴스나 허위뉴스의 바람직한 접근방식의 답은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

4-1. 패널 토론 : 허위정보와 뉴스미디어의 역할

- (허광준) 우리가 허위정보를 놓고 생각하다보면 뉴스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협업 네트워크로써 팩트체크 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언론의 일상적인 업무는 보도 전에 정확한 팩트체크를 한 후 보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240번 버스 사례가 확산된 이유는 매체가 잘못된 주장을 뉴스로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언론의 일상적인 작업이외에 제기되는 문제를 선별, 선점함으로써 팩트체크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차원에서 팩트체크의 기본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 (전은령) 가짜뉴스와 팩트체크를 동의어로 쓸 수 없다. 저는 뉴스미디어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겠다. 기술이 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일상적인 리터러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어떠한 측위이든지 간에 언론매체일 것이다. 학교 교육 이외에 교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 **(전은령)** 미디어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근거에 기반한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본을 배우는 것이 언론일 것이다. 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사실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처럼 글쓰기 규범들이 미디어 안에서도 약화되어있는 것 같다. 기자 생활을 한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팩트가 틀릴까봐 전전긍긍한다. 때문에 미디어가 팩트를 함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느슨하게 했던 문화가 있었던 것 같다.
- **(전은령)** 미국의 경우 예를 들면, 굉장히 잘 쓴 기사이지만 과제의 소스의 이름을 잘못적었다고 F를 줬다. 이런 것이 굉장히 엄격하다. AP 뉴스나 각 신문들을 보면 스타일 북이 있다. 하나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개의 소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서로 같은 의견이면 안 되고 반드시 다른 의견이어야 한다. 이처럼 현장에서 훈련을 받는다. 폴리티 팩트에서 자기들이 만든 체크리스트가 7개 정도 있다.
- **(전은령)** 상업적인 아이템이 아니라 양질의 정보가 돌아야한다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구글, 페이스북)조차도 좋은 정보가 없으면 쓰레기통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좋은 정보가 돌아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언론에서 규칙들을 못 지키고 있다. 언론에서 사실을 알아가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4-2. 패널 토론 : 가짜뉴스와 법률적 제제

- **(허광준)** 인터넷의 기사의 법률적인 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인터넷은 빠르고 널리 확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하고 다르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같은 법률적 장치가 있지만 다른 법률적인 제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가짜뉴스에서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효용이 없는 것인가요?
- **(민노씨)**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효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법률적인 효용이 있다면 시민사회나 국민에게 입증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가 그 법의 효용을 입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모든 부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법률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 **(민노씨)** 인터넷을 통해 정보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 이전의 미디어 환경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임시조치이다. 잘못된 정보라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을 포털이 수용해서 즉시 그 콘텐츠를 차단한다. 이것으로 콘텐츠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삭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반사용자가 법률적으로 입증을 위해 시간,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민노씨)** 법안의 성격이 두 가지 있다. 허위뉴스를 생산하는 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 포털사업자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임시조치는 민간 자율의 방식이 맞지만, 정보통신망법에 간접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측면에서는 포털의 관리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섷다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만큼 법이 가지고 있는 규제성이라는 것이 민간의 영역에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 (민노씨)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담론 시장의 풍성함을 얼마나 약화시키고 있는가? 임시조치 사례를 통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임시조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자들이 무엇인가? 돈 있고, 힘 있는 정치인,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임시조치를 신청해 왔다. 평범한 개인들이 자신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임시조치가 오남용 되어 왔다.

4.3. 패널 토론 :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법

- (허광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미디어 사용자의 좀 더 원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다. IT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실행되는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적인 접근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보가 범람하는 사회에 잘못된 정보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이 코딩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나 그것이 실행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입법 활동이나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보고 싶다.
- (구본권) 전혀 아니다. 그동안 신문 활용교육을 했다. 정보를 활용하는 법이나 비교하는 읽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기능적이다. 우리는 정보가 믿을 만한지, 소스가 어딘지, 누구의 의도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인지 등을 따지는 것을 익혀야지 비판적인 사고력이 길러질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서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출처를 찾기 더 애매해질 때 앞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지 못하면 더 피해가 커질 것이다.
- (구본권) 우리는 편리한 도구를 쓰면서 비판적 사고 없이 귀차니즘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판적 사고를 가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비판적 사고가 금기시 되어 왔다. Critic이라는 단어의 뜻은 판단에는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되므로 근거 기반한 사고를 말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근거와 기준이 없는 사고를 배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그것에 기초해서 토론도 가능하고 주장의 반박도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의 언론의 경우 인용할 때도 출처를 정확히 지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지적인 사회로 업그레이드되기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질의

(플로어)

- 기성 언론의 오보, 소스를 확인하지 않거나 어떠한 의도를 갖든지 잘못된 기사에 대한 것과 SNS를 통해서 기사형식을 통해서 전달되는 허위정보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 언론에서의 오보는 언론사 내에서 더욱 규제를 강화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포털이나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서의 대응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허나 오늘 토론에서는 두 가지 논의가 섞여서 적절한 대안이 나오지 힘들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 서울대 팩트체크가 가짜뉴스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민간

영역에서 기존의 언론사와 협업을 해서 특정 영역에서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가짜뉴스를 막을 수 없는 수단이 아니다.

- 오히려 한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가 팩트체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뢰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해야하는 심층 보도기능, 발굴기능을 스스로 버리고 오히려 다른 언론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 서울대 팩트체크가 상당히 기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결과는 사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네이버가 포탈에 해야 될 팩트 필터 기능을 서울대 팩트체크를 지원하면서 위탁을 맡긴 것이 아닌가?

(허광준)

- 인터넷 디지털 허위정보에 대한 논의는 거버넌스를 통해 다자간의 노력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거버넌스는 굉장히 중요하고, 한 축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늘 패널 분들도 각 영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다.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면 공동의 노력, 그것을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 하는 방안들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계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로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오보와 허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다.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연결된 부분이 있다. 언론의 역할이나 책임을 같이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일상적으로 이러한 2가지를 헛갈리기도 한다. 사실 헛갈릴 수밖에 없다. 그 두 부분이 연결적 부분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정은령)

- 서울대 팩트체크의 주체는 서울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가 직접 팩트체크를 한다. 또한, A 후보가 한 말에 대해서 5개의 다른 언론이 교차검증을 한다.
- 거버넌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동의한다. 서울대 팩트체크 모델은 일종의 민간자율모델이다. 가짜뉴스는 서울대 팩트체크가 절대로 해결 못한다. 서울대 팩트체크가 시작을 했으니 민간기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미국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

(플로어)

- 저는 서울대학교 팩트체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좀 더 확장시키면 좋겠다. 요새 AI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사용자에게 AI로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하면 된다. 인력이 부족하므로 판단은 읽는 사람이 한다. 분산 처리된 결과, 인지 사이언스가 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하면 된다. 앞으로 언론사 등에 펀딩을 많이 받아서 기술 개발을 더 했으면 좋겠다.

(정은령)

- 실시간 팩트체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많이 쌓아나가고 있다.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는 각사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이제 메타데이터로 만들고 있다. 사람과 AI의 실시간 검증 결과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9 보고서

세션명	인터넷 주소자원 개방정책		
일시	2017.9.15.(금) 15:15~16:45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소회의실 5
참석자	사회	강경란(아주대학교)	
	패널	조진현(한국인터넷진흥원)	김경석(부산대학교)
		이영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웅준(법무법인 유미)	
플로어	약 10명 참여		

세션 요약

워크숍 취지	<p>한국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의 주소자원분과위원회에서는 국내 인터넷 주소 자원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p> <p>지난 4월부터 주소자원분과위원회 내에서는 기존에 도메인 이름 관련해서 닫혀 있던 정책에서 개방하는 정책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p> <p>주소 자원 특히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 핵심 요소이므로, 그동안 주소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이슈들에 대해 한국 IGF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p> <p>크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가 혼용된 도메인 이름 허용 - 숫자로만 구성된 도메인 이름 허용 - 해외 주소지 개방 - 예약어/유보어 개방
--------	--

<주제1> .kr/한국 도메인 이름 등록자 해외 주소지 허용 (강경란 교수)

-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서 .kr/.한국 신청자 및 등록자 주소지를 국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개정하여 해외 주소지를 가진 개인 및 기관도 등록을 허용해야 함.
- 정책 도입의 필요성으로 △.kr/.한국 도메인 활성화, △해외법인과 개인 간의 .kr/.한국 도메인 등록 형평성 해결, △도메인 이름 관련 문제 발생 시 등록자 추적 용이(해외 사례 참고)함 등이 제기됨.
- 정책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 △허용의 범위, △해외 주소지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방법, △분쟁 발생 시 적용할 규정, △해외 주소지 개방 시 등록대행업체의 추가 개발 비용 대비 영업 이익 등이 있음.
- 해외주소지 개방을 통한 도메인 등록 활성화를 기대하나, 한편으로 도메인 관련 분쟁 등 문제 발생 시 등록자와의 연락 보장 필요 등에 따라 해외 주소지 개방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음.

<주제2> 예약어/유보어 개방 정책 논의(이영음 교수)

- 도메인 이름 등록자들의 선택권 확대 및 도메인 등록 수요 증진으로 예약어에 대한 개방이 논의됨. 다만,

개방 후에는 예약어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예약어로 확보해야 할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개방 범위 설정
 - 성씨 영문 표기에 대해, 한글 영문 표기 변경에 따라 무효한 표기 (총 397개 중 259개 삭제)
 - 한글 .kr의 유보어인 보통명사에 대해, 공공 도메인으로서의 수요가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것부터 개방

<주제3> .kr/한국 아래 한자혼용 도메인 이름의 허용에 관한 논의(전웅준 변호사)

배경	찬성론	반대론
-TLD에서 한자 사용 이슈와 구별 -IDN차원에서 진행되는 한자 TLD생성 논의와 맞물려 국내 ccTLD에서 2단계 한자도메인 이름 허용 관련 정책 필요성	-이용자 선택권 보장 (도메인의 공공성) -향후 한자 도메인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	-2단계 한자 도메인에 대한 수요 부족 -Registrar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 -정부시책인 한글전용정책과 배치(국어기본법)

<주제4> 한글 및 한자 최상위 도메인 관련 국내 커뮤니티 의견 수렴(김경석 교수)

2017년 3월 3일에 나온 K-LGR v 0.7은 11,172개의 한글 음절, 4,758의 한자, 152개의 변형 그룹을 포함하고 있음.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K-LGR을 두고 논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1)한국에서 한자 도메인이 필요한지 2)한글-한자 도메인이 필요한지 3)한자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지로 구분됨.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함.

세부 내용

1. [강경란 교수] .kr/한국 도메인 이름 등록자 해외 주소지 허용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서 .kr/.한국 신청자 및 등록자 주소지를 국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개정하여 해외 주소지를 가진 개인 및 기관도 등록을 허용해야 함

1) 정책 도입의 필요성 1

(1) .kr/한국 도메인 활성화

- .kr/.한국의 최근 등록 추이를 보면 신규 등록 및 총 등록 수 감소 추세
-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주소 개인 및 기관의 등록을 양성화
- 주소지 제한 정책을 폐지하여 .kr 및 .한국 도메인 등록 활성화

2) 정책 도입의 필요성 2

(1) 해외법인과 개인 간의 .kr/한국 도메인 등록 형평성 해결

-개인은 국내 주소지 확보가 비교적 용이, 그러나 법인은 국내 주소지 확보가 어려워서 .kr/.한국에 도메인 등록이 어려움

(2) 도메인 이름 관련 문제 발생 시 등록자 추적 용이(해외 사례 참고)

- 일본: “Non-Japanese corporations registered in Japan as “Gaikoku Kaisha (Foreign Company)” may also apply for a CO.JP domain name.”
- 미국: “A foreign entity or organization that has a bona fide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any of its possessions or territories. Applicant must also.....”

-영국: "Where a registrant address is not within the United Kingdom, a UK address for service must also be supplied"

3) 정책 도입 시 고려사항 1

(1) 허용의 범위

- 의견①: 임의의 일반인이 .kr/.한국 하에 도메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도 허용
- 의견②: 한국에서 비즈니스 등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에 한해서 허용

(2) 해외 주소지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방법

- 의견①: 등록 주소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락이 가능한 곳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예를 들어 호텔) 주소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함
- 의견②: 주소지 정확성 보장을 위해 해당된 국가에서 공증된 주소만을 허용함(공증서류 제출 의무)
- 의견③: 연락처를 우편 주소에서 email로 변경하여 가입 시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더불어 연락의 신속성을 보장함
- 의견④: 등록된 주소가 잘못된 것이 확인된 경우,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11조(등록주소)에 의거하여 도메인 등록 취소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등록자가 유의하여 등록할 것임

4) 정책 도입 시 고려사항 2

(1) 분쟁 발생 시 적용할 규정

- 의견①: 「도메인이름관리준칙」, 「도메인이름관리세칙」 등 국내 도메인 이름 관련 정책이 집행되는 것으로 등록 시에 명시하여 등록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2) 해외 주소지 개방 시 등록대행업체의 추가 개발 비용 대비 영업 이익

- 의견①: 해외 주소 입력을 위한 화면 추가 개발 비용이 소요될 것이나, 이로 인한 도메인 등록 건수 확대에 대한 기대가 낮음
- 의견②: 한류 확산 등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결론

- 해외주소지 개방을 통한 도메인 등록 활성화를 기대함
- 도메인 관련 분쟁 등 문제 발생 시 등록자와의 연락 보장 필요 등에 따라 해외 주소지 개방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음

2. [이영음 교수] 예약어/유보어 개방 정책 논의

1) 예약어 개요

(1) 예약어 정의

- ① 공공의 이익 또는 특수한 목적으로 KISA에서 사전에 목록을 정한 단어로서 등록이 제한된 단어
- ② 도메인 주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된 최소한의 필수 단어

(2) 논점: 도메인 영역 보호 vs 개방

2) 예약어 논의 역사

(1) 어느 단계에서의 유보어인가?

- ① co.kr, ac.kr, pe.kr 등의 3단계
- ② 영문, 한글 2단계 (.kr/.한국)

(2) 유보어 선정 원칙

-설정 시기, 환경에 따라 개방성과 중요 요인이 달라짐

(3)예약어 논의 역사

설정시기	예약어 적용대상	예약어 원칙	비고
1998	co.kr, ac.kr, pe.kr (영문3단계)	-비속어의 영어 표현(2) -숫자 한 글자 -영어 알파벳 한 글자 -도메인 관리(2) -pe.kr의 경우 성씨의 영문표기(405)	
2003	한글.kr (한글2단계)	-한글자 단어 전체 -비속어 (43) -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글자 조합(4) -보통명사 (656)	보통명사의 포함 으로 지나친 규 제 논란
2006	.kr (영문2단계)	-영문 두 글자 이하로 구성된 문자열 -숫자와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된 문자열 -비속어의 영어 표현 (17) -기존의 2단계 공공 도메인(17) -기타 도메인 관리(39) -지역명 (195)	지역명은 신규 최상위 도메인에 서도 유지 주장 강함
2011	.한국 (영문, 한글 2단계)	-반사회적 단어(97) -국가명, 지역명(460) -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이름(12)	한글 2단계와는 달리 보통명사를 제함으로써 개방 정책

3) 예약어 관련 현재의 논의

(1) 개방 목적

- ①도메인 이름 등록자들의 선택권 확대 및 도메인 등록 수요 증진
- ②다만, 개방 후에는 예약어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2) 개방 범위

-예약어로 확보해야 할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개방

- ①성씨 영문 표기에 대해, 한글 영문 표기 변경에 따라 무효한 표기 (총 397개 중 259개 삭제)
- ②한글 .kr의 유보어인 보통명사에 대해, 공공 도메인으로서의 수요가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것부터 개방

(3) 추후 활동 계획

- ①개방 범위 별 개방에 대한 타당한 찬반 근거 토론
- ②KrIGF 참석자 대상 의견 수렴 온오프라인 설문지 구축, 세션 참가자 대상 오프라인 설문 실시 및 온라인 설문 사이트 홍보
- ③위에 제시된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조사 및 새로운 관점 발견

3. [전웅준 변호사] .kr/.한국 아래 한자 혼용 도메인 이름의 허용에 관한 논의

1) 논의의 시작

(1) TLD에서 한자 사용 이슈와 구별

- ①IDN(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자로 된 TLD(Top Level Domain)를 생성하는 국제적 이슈와 구별
- ②.kr/.한국 아래에 한자 단독 또는 한자를 혼용하는 2단계/3단계 도메인 이름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

(ex. 美術館.kr(o), 증권.會社(x))

③.kr/.한국 ccTLD는 인터넷주소자원법과 국내 registry에 의해 관리되므로, 사안 자체는 국내적 문제

(2) 필요성의 제기

①숫자, 해외 주소지에 대한 국내 도메인이름 등록 허용 이슈와 같은 맥락

②IDN차원에서 진행되는 한자 TLD생성 논의와 맞물려서 국내 ccTLD에서 2단계 한자 도메인 이름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 대두

③국내 Registrar 등의 도메인 산업적 이해관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

2) 찬반론

(1) 찬성

①이용자 선택권 보장 (도메인의 공공성)

-우리 사회에서 한자가 사용되고 이므로 이를 도메인이름에 반영(한자 상표, 상호)

-표현의 자유, 도메인에 대한 접근성

②한자 도메인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

-ICANN의 LGR(Label Generation Rule)작업에서 한국이 한자 관련 이해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책논의에서 배제된다며, 향후 한자 TLD등록시 중국, 일본에서 정의한 규칙에 따라야 하는 문제-이 체자, 한국식 한자가 존재하여 등록을 할 수 없는 글자가 발생할 수 있음

-향후 한자 관련 도메인 논의에서 한국의 참여권 보장

(2) 반대

①2단계 한자 도메인에 대한 수요 부족

②Registrar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

-등록대행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자 전부가 한자(한글혼용) 도메인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등록대행자마다 시스템 구축 현황이 상이하므로, 한자 도메인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이 300만원~1억 원까지 다양하게 예측됨

-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1개월정도의 M/M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③정부시책인 한글전용정책과 배치(국어기본법)

-도메인 영역은 국어기본법의 대상이 아님

-이 문제는 정부가 국내 도메인 정책을 관장하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임

3) 검토

(1) 검토의 관점

①이용자의 수요, 사업자의 비용, 정책적 의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②이용자의 수요, 사업자의 비용의 관점

-현재 이용자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한자 사용 실태를 단정하기 어려움

-사업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나,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부득이한 면이 있고 해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임

-한글도메인, PE 도메인의 사례를 보면, 도메인 정책은 시장의 수요, 비용의 측면보다는 도메인 선택의 기회 제공, 공공성 확보의 관점이 더 크다고 생각됨

(2) 정책적 함의

- ①도메인 영역에서 이용자에게 한자 사용 기회를 제공 (상업적 표현의 자유, 도메인 접근성 확대)
- ②한자 도메인 관련 국제적 논의에서 한국의 참여권 보장
- ③사업자 비용부담을 고려할 것

4. [김경석 교수] 한글 및 한자 최상위 도메인 관련 국내 커뮤니티 의견 수렴

1) 소개

- “Kore”(Korean Label)에 포함되는 글자들: 한글과 한자 모두 K-LGR에 포함됨
- K-LGR v 0.7 (2017.03.03.): 11172개의 한글 음절, 4758개의 한자, 152개의 변형그룹
- 2017년 1월, 한국인터넷주소위원회 거버넌스 연합은 .kr/.한국 주소 2단계에서 한자 사용을 허락하기 위해 WG를 만들.

2) 한국어와 중국어 변형그룹에 대한 리뷰

- KGP와 CGP는 K-LGR과 C-LGR의 변형그룹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했음
- 3개의 가능한 시나리오가 도출됨
- 시나리오①중국어 변형 그룹은 수정사항 없이 유지된다.
- [K:indep(C1), indep(C2)]; [C: vg (C1,C2)]->[K&C: vg (C1,C2)]
- 시나리오②중국어 변형 그룹이 완전히 나누어진다.
- [K: indep(C1), indep(C2)]; [C: vg(C1, C2)]->[K&C :indep (C1), indep (C2)]
- [K: indep(C1), indep(C2), indep(C3)]; [C: vg (C1, C2, C3)]-> [K&C: indep(C1), indep(C2), indep(C3)];
- 시나리오③중국어 변형 그룹이 부분적으로 나누어진다.
- [K: vg(C4, C5), indep(C6)]; [C: vg (C4, C5, C6)]; -> [K&C: vg (C4,C5), indep (C6)]

3) K-LGR v0.7 (2017.03.03.)

- K-LGR v0.6 (2016.11.28.): 4819개의 한자
- K-LGR v0.7(2017.03.03.): 4758개의 한자
- K-LGR v0.7과 C-LGR 의 변형그룹 사이에 충돌 없음

4) 논의가 필요한 사항

- ①한국에서 한자도메인이 필요한가?
- ②한국에서 한글-한자 도메인이 필요한가?
- ③한국에서 한자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가?

질의	(플로어)
	- 한 홈페이지 당, 단 하나의 주소만 등록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이 시스템 내에서 굳이 한자 도메인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경란 교수)
	- 우리 역시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
	(조진현 센터장)
	- 한자 도메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플로어)
	- 도메인에 한자를 쓰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

리는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실제 도메인에 한자를 쓰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비용이 드느냐, 권리를 포기할 정도의 결단이 있느냐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이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생략한 채 단순히 한자 쓰는 권리를 포기하자고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경석 교수)

- 국내에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느냐를 잠깐 살펴본다면, 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 ICANN에서 먼저 우리에게 요청했었던 사항이다. 현재는 또 정반대로 한자 도메인 논의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ICANN이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진현 센터장)

- K-LGR에 한자와 한글 모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일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애초에 2단계 도메인에서 한자 표기를 허용하지 못했었느냐의 문제는 당시 정책 시행을 위해 2개월 밖에 없는 시간 안에 한자 표기까지 허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랐고 일단 한글 표기만 가능하게 했었다.

(플로어)

- 우리나라의 예약어에는 보통명사가 빠져있는데 외국과 상당부분 차이를 보인다. 보통명사를 허용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예약어로 묶어두어 경제적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인가?

(강경란 교수)

- 그와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예약어를 설정했던 각각의 원인들이 해소가 된다면 이후에 풀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플로어)

- 보통명사를 허용하게 해주면 도메인 신청이 폭주해 Registrar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상황도 벌어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식 교수)

-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는 각각의 회사의 재정적 범위 내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튜토리얼 1 보고서

세션명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와 활용		
일시	2017.9.15.(금) 10:45~12:15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소회의실 6
발표자	민경식(한국인터넷진흥원)		
플로어	약 17명 참여		

1. 블록체인의 개념

-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 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
-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의 논문 “비트코인: 개인간 전자화폐 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의 개념이 처음 유입

(1) 블록과 체인

- 블록: 일정기간 내 거래가 기록된 장부로 각 블록의 헤더와 바디로 구성 되어 정보의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한 해쉬값, 변경된 데이터의 암호와 저장, 참여자 확인을 위한 전자서명 기술이 활용되어 보안이 우수함
- 체인: 블록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

(2) 비트코인

- 비트코인은 특정한 발행주체가 없는 P2P (Peer-to-Peer) 네트워크상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에 따라 채굴 (minning) 을 통해 발행
-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BTC 로 정해져 있으며 채굴을 통해 발행되는 양은 (현재 12.5 BTC)은 약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설계

(3) 비트코인 현황

- 비트코인의 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7년 5월 기준 전체 거래량은 약 13억 달러, 가격은 2,300만 달러를 기록
- 현재 약 7700개의 노드, 150 GB의 크기, 1500만 개의 지갑, 하루 약 26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존재

(4) 블록체인 페리다임의 진화 방향

- 암호화폐, 화폐 전송, 외환 송금, 전자 지불만 가능한 비트코인의 1세대 블록체인
- 스마트계약 (smart contract), 탈중앙화 자율 조직 (DAO) 라는 개념을 가진 이더리움 (Ethereum) 이 나타나며 2세대 블록체인의 금융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 제시

2. 블록체인의 활용분야

- 2세대 블록체인 자산, 신뢰, 소유권, 화폐, 신원, 계약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개발

(1) 블록체인 유형별 주요 특징

- 퍼블릭 블록체인 (Public Blockchain): 공개적 접근이 가능한 최초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
- 프라이빗 블록체인 (Private Blockchain): 허가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한 개인형 블록체인
- 컨소시엄 블록체인 (Consortium Blockchain): 허가한 그룹의 사용자만 접근 가능해 네트워크 확장이 용이하고 거래 속도가 빠름

(2) 정책 활용 사례

-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 시민권” 제도 투입해 신원 확인 및 정부 서비스에 접근을 인증하는 용도
- 영국의 “beyond blockchain” 모든 공공 서비스에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 적용 추진

(3) 블록체인 활용 기대분야

- 신분 증명, 출생, 생존 증명, 학위 증명의 개인 인증
- 스마트 시티, 전자 거래, IoT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
- 부동산 등기, 의료정부 관리, 공문서 관리들의 문서 관리

(4) 주요 서비스 구현 사례

- KT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 서명 이미지 관리
- 한국조폐공사 (KOMSCO)의 공공분야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3.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뢰 사회 구현

- 블록체인 글로벌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금융, 물류, IoT를 포함하여 전 영역에 걸쳐 적용 확대중

(1) 부족한 블록체인 인프라

- 국내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 및 민간으로의 확장이 필요
- 블록체인 관련 글로벌 시장이 2021년 약 23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정부의 정책 현황

-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발족, “블록체인 오픈 포럼” 출범 등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지원 토대 마련
- 비금융분야 블록체인 기술 적용 확산을 위한 범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질의	<p>(플로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퍼레저 퍼블릭의 성격이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p>(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내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퍼블릭은 아니고 프라이빗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을 매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업용 기반으로는 코다도 있고 원자만 만드는 특수한 형태도 존재 하지만 구조적인 차이이고 하이퍼레저 퍼블릭은 데이터를 많이 나눌 수 있어 기업용이나 서비스 기반 등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	--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튜토리얼 2 보고서

세션명	AI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내일		
일시	2017.9.15.(금) 13:30~15:00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태관 소회의실 6
발표자	정수현(카카오)		
플로어	약 12명 참여		

1. AI 발전 역사

- 인공지능은 1950년대 처음 등장했지만 기술,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의 한계 존재
- 1980년대 인터넷 출현으로 많아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급속도로 발전 시작 후 스팸 메일 필터링과 같은 기계 학습 시작
- 2010년대 인간의 수준과 비슷한 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로 발전

2. AI 란? 머신 러닝과 딥러닝

- 인공지능이란 이미지, 영상, 문자, 상황 등 입력된 정보를 판단해 그에 맞는 행동이나 언어를 출력하는 것
- 현재 AI는 복잡한 수학적 계산, 해상도가 낮은 사물 파악 뛰어나지만 이미지를 설명하거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부족

(1)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

- 특정 과제 해결 후 성과를 측정하고 경험을 통해 학습
- AI는 학습이 오래 걸리지만 러닝 커브를 극복한 후 정확하게 예측 가능
- "입력"에 해당되는 "출력"이 존재하는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
- "입력"에 해당되는 "출력"이 없는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
- "입력"에 대한 "출력"이 보상의 형태로 주어지는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의 방법 존재

(2) 인공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 입력된 정보를 통해 훈련 후 검증을 거쳐 학습을 하고 반복되는 학습 통해 정확도 증가
- 입력된 데이터와 parameter의 일차방정식조합을 통해 출력이 원하는 결과로 나오도록 parameter를 찾는 학습

(3) Deep Learning

- 은닉층 (Hidden layer)이 2개 이상인 경우 deep layer 층 구성 한다 정의
- 복잡한 문제를 일차 방정식의 조합으로 구조화 한 후 결과를 찾아주는 parameter를 학습을 통해 찾음
- 훈련 데이터에 over fitting으로 시험 data fitting을 잘 못하거나, 신호의 강도가 줄어 깊이 있는 전달이 어려운 vanishing gradient 문제 존재
- 층이 더 깊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존재할 때 더 정확한 값과 예측 성능 개선

3. State-of-Arts 기술

- 딥러닝을 통한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은 지도 학습을 통한 “출력”이 존재 하는 부동산, 온라인 광고, 사진 태그, 목소리 인식, 번역 등

(1) 이미지 생성: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 학습을 통해 입력된 이미지를 텍스트로 출력 하고 입력된 텍스트를 출력된 이미지로 시험
-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경쟁해 이미지 생성
- 저화질 사진을 고화질로 보정 가능해 몽타주 작성에 용이

(2) 비즈니스와 AI

- AI 가 잘 푸는 문제를 정의 후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해 알고리즘 설계 후 반복적 학습 필요

질의

(플로어)

- 카카오에서는 AI를 접목시킨 아이템들을 많이 개발 하고 있나요?

(정수현)

- 많이 개발되고 있고 곧 스피커가 출시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AI 가 비즈니스나 실생활에 쓰이는 영역은 많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술은 존재하지만 수익성과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연결을 하는 것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기업의 공통된 관심사 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는 AI를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사용가능하고 현재 금융권에서는 보험을 설계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도로자율 자동차나 여러 기술이 실생활에 바로 사용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AI 는 세상을 조금씩 또 빠르게 바꿔 가고 있습니다.

(플로어)

- 최근 AI 와 관련해서 가장 상업화가 잘 된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수현)

- 의료 영상 시장은 거의 상업화가 되었고 비즈니스 효율 측면에서 많은 제조업 들이 AI 기술을 접목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단순한 상담 을 할 수 있는 챗봇 같은 기술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플로어)

- 전기, 자동차의 발전은 인간 능력의 확장을 이끌었다면 지금 개발되는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마치 인간의 삶을 기계가 대신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마다, 기업들은 묶여 있는 데이터나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곤 하는데 개발자들은 기술이 가져 올 사회적 파장이나 네거티브를 염두에 두고 기술을 개발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수현)

- 기술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파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개발이 활성화된 음성인식 서비스를 보면 다른 인종의 발음에 비해서 백인 발음을 가진 남성의 목소리가 가장 잘 인식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bias가 존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중요한 것이고 점차 AI가 실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데, 인간의 노동력은 어디까지 대체 될 수 있는지, 또 기술의 책임소재에 대한 시민 단체, 개인, 정부의 공통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통해 AI의 발전이 생각보다 빠르게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빨리 이러한 문제들이 공론화 되어 정책으로 발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튜토리얼 3 보고서

세션명	인터넷 거버넌스 들여다보기 (ICANN, IGF, SIG)		
일시	2017.9.15.(금) 15:15~16:45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소회의실 6
발표자	15:15~15:30	박신영(한국인터넷진흥원)	
	15:30~16:00	Kelvin Wong(ICANN)	
	16:00~16:15	안정배(APSIG)	
플로어	약 8명 참여		

1. 인터넷 거버넌스

- 정부, 민간, 시민 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인터넷의 발전과 활용을 위한 규범, 의사결정의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

(1) 배경 및 범위

- 인터넷의 확산 이후 거론된 새로운 인터넷 주소 관리 체계가 미국 국가안보국 인터넷의 검열 활동 파문을 거점으로 정부개입을 배제한 민간 주도 국제기구로 설립
- IP (Internet Protocol), 도메인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관련 정책의 조정업무의 “협회의 거버넌스”
- 인터넷 접속 비용, 스팸, 보안, 인권 등의 이슈로 확장된 “광의의 거버넌스”

(2)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 ICANN: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 ITU: 전기통신업무의 국제적 관리 기구

(3)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IGF)

- 정부, 민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인터넷 현안과 공공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공개 포럼
-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포럼의 한계점 존재

(4) 지역별 IGF

-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이슈 및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변화 대응을 위해 설립
- 아태지역 IGF (APrIGF) 와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KrIGF)

2. ICANN

- 안정되고 안전한 인터넷 고유의 환경 보장 지원을 목표
-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주소를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민간, 조직, 위원회가 함께 발전시키고 시행

(1) 정책 지원

- 각 커뮤니티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커뮤니티의 정책들을 허가하고 도입
- 지역별 오피스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른 지역의 제안을 수행
- 각국의 이해관계자들은 정책을 조언, 제안, 평가해 더 나은 솔루션을 추진

(2) ICANN의 이해관계 공동체

- 개인, 비영리 단체, 산업체, 정부는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지원 조직 (Supporting Organizations, SOs) 은 해당하는 지역의 추천을 통한 정책을 검토
- 자문 위원회 (Advisory Committees, ACs) 는 ICANN 주제를 조언 및 추천

(3) 일반 최상위 도메인 (generic Top Level Domain, gTLD)

- 도메인 네임 (Domain Name) 의 경쟁을 통해 혁신과 다양성을 위한 멀티 스택 홀더의 정책 개발의 예
- .xyz, .global, .ink, .build 등의 새로운 도메인 네임 확장

3.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 (School of Internet governance, SIG)

-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인권,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
- Euro SSIG, South SIG 등의 지역별, afSIG, pkSIG 등의 국가별, 온라인상의 SIG가 설립됨

(1)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

- 2015년 krSIG의 설립 제안 이후 12월 KIGA's WG 로 시작되어 매년 튜토리얼 세션을 개설

(2)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한계점

- 주소자원을 정부가 관리한다는 법률 아래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할이 제한적
- 정부, 민간 부문, 차세대의 관심과 개입 부족